# 2020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2020.1.









# CONTENTS

| 2020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

I 연구자(개인/공동)지원사업 1
1.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       3         2. 개인연구자지원사업(신진, 중견, 우수학자)       9         3. 명저번역지원사업       18         4. 저술출판지원사업       24         5.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30         6. 학제간융합연구지원사업       37         7. 글로벌연구네트워크지원(GRN)사업       41
II 연구소(집단)지원사업 ····· 45
1.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       47         2. 토대연구지원사업       56         3. 신흥지역연구지원사업       61         4. 인문한국(HK)/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       65         5.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       74
인문학대중화사업(인문도시) 85
Ⅳ 학술기반구축(학술자원공동관리체계구축) ······· 95
V 기타사항 105
1. 주요 행정사항 ······ 107 2. 공통 적용사항 ····· 110

# I. 연구자(개인/공동)지원사업

- 1.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
- 2. 개인연구자지원사업(신진, 중견, 우수학자)
- 3. 저술출판지원사업
- 4. 명저번역지원사업
- 5.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 6. 학제간융합연구지원사업
- 7. 글로벌연구네트워크지원(GRN)사업

#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

##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가칭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인문사회분야 박사급 연구자들이 단절 없는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연구안전망을 구축하여 학술연구의 토대 강화
  - \* 이하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라 함
- (박사후국내연수) 박사학위 소지 연구자에게 연구기관에서의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연구능력 질적 향상 유도
- **(학술연구교수)** 박사학위 소지 연구자가 **대학연구소**에서 **연구**에 **전념**하도록 **지원**하여 우수연구인력 육성 및 대학의 우수 연구성과 창출 도모

#### □ 지원근거 및 추진경과

- 지원근거
  - 「학술진흥법」제3조(정부의 책무),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및 제7조(학문후속세대의 육성)
- 추진경과
  - ('82) 박사후 국외연수지원사업 시작
  - ('87) 박사후 국내연수지원사업 시작
  - ('01) 학술연구교수지원사업 시작
  - ('07)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을 인문사회와 이공으로 분리
  - ('11) 시간강사 지원사업 신설
  - ('18) 박사후국내연수 및 학술연구교수 연차점검 간소화
  - ('20)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박사후국내연수, 학술연구교수,시간 강사연구지원사업)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로 통합·개편

# □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기간	연간 연구비
인문사회	유형1	비비니해게히 스린 니 isl저	2+3년	40백만원 <sup>*</sup> /연
학 <u>술</u> 연구 교수	유형2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 확정	1년	14백만원 <sup>**</sup> /연
박사후국내연수		국내·외 대학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인 자	1~2년	34백만원***/연
학술연구교수		박사학위 소지자 중 고등교육기관 부설 연구소 소속 전임 연구교수 채용 예정자	3년	40백만원****/연

- \* 인건비 39백만원(보험부담금, 퇴직금 포함), 기관지원금 1백만원
- \*\* 인건비 13백만원. 기관지원금 1백만원
- \*\*\* 인건비 33백만원(보험부담금, 퇴직금 포함), 기관지원금 1백만원
- \*\*\*\* 인건비 33백만원(보험부담금, 퇴직금 포함), 연구비 6백만원, 기관지원금 1백만원
- ※ '20년도부터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박사후국내연수, 학술연구교수, 시간강사연구)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로 통합·개편

## □ 2019년 지원 실적

(단위 : 개, 백만원)

사업명	신규과제		계속	과제	계		
শ্বত	과제 수	연구비	과제 수	연구비	과제 수	연구비	
박사후국내연수	176	6,018	91	3,162	267	9,180	
학술연구교수	46	1,800	178	7,320	224	9,120	
시간강사연구	1,282	17,952	-	-	1,282	17,952	
합계	1,504	25,770	269	10,482	1,773	36,252	

#### □ 주요 성과

(단위 : 건)

		'1	.6			'1	.7			'1	8	
구분	SCI(E)	등재 (후보)	일반	저역서	SCI(E)	등재 (후보)	일반	저역서	SCI(E)	등재 (후보)	일반	저역서
박사후국내	5	131	15	21	11	183	23	24	22	176	73	18
학술연구교수	11	226	14	8	8	139	26	23	18	135	60	13
시간강사연구	25	1,291	84	33	13	1,135	163	67	105	1,451	111	53
합계	41	1,648	113	62	32	1,457	212	114	145	1,762	244	84

# 2. 2020년도 추진계획

#### 중점 추진 방향

■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박사후국내연수, 학술연구교수,시간강사연구 지원사업)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로 통합·개편

#### □ 지원 규모

(단위: 개, 백만원)

사업명		신규	과제	계속과제		계	
<u> </u>		과제 수	연구비	과제 수	연구비	과제 수	연구비
 인문사회	유형1	300	12,000	-	-	300	12,000
학술연구교수	유형2	3,000	42,000	-	-	3,000	42,000
박사후국내	연수	80	2,720	97	3298	177	6,018
학술연구.	고수	-	-	108	4,480	108	4,480
 합계		3,380	56,720	205	7,778	3,585	64,498

※ 예산 운영 상황에 따라 지원규모 향후 변동 가능

#### □ 신규과제 선정

## 가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 확정

#### < 연구업적 산정 방식 >

▶ 논문 :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학술지 또는 SCI(E), A&HCI·SSCI, SCOPUS 등재지는 업적 1편

■ 저서·역서 : 단독 저작 1건은 업적 3편, 공동 저작 1건은 업적 2편

■ 특허 : 특허 1건은 업적 1편

#### 나 신청 및 참여제한

사업에 신청할 수 없음

- 본 사업 내에서는 1인이 1과제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상반기 선정 사업" 내에서는 연구책임자로 1과제만 신청 가능
- 상반기 및 하반기 접수과제에 각각 신청은 가능하나, 상반기 연구책임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하반기 접수과제의 선정결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하반기 신청을 포기하거나 상반기 선정을 포기해야 함
   ※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재단보고(주관연구기관을 통해 공문 발송)
   ※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2016년 선정자부터는 학문후속세대지원(박사후국내연수)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3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1과제로 한정함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제18조
- 온라인 신청 마감일 현재 제재를 받고 있는 연구자는 신청불가
- 학술연구지원사업 다수과제에 참여 중인 연구자 및 대학 등이 학술 진흥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한 과제에 대해 사업비 지급 중지가 확정되는 경우 타 과제에 대해서도 사업비 지급 중지 및 참여제한 ('18년 신규선정 과제부터 적용)
- 정부, 대학, 민간기업 등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는 자가 본 사업에 선정되어 인건비를 받게되는 경우, 연구개시일부터 본 사업에서만 인건비를 받아야 함(인건비 중복 수혜 불가)

# 다 선정평가

○ 평가절차 및 단계

①요건심사	②전공평가	③종합평가
신청요강의 신청자격 충족여부검토	⇒ <mark>온라인 평가</mark> (필요시 PM Review 실시) ⇒	평가 결과 종합검토 및 최종과제 선정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 평가내용: 연구의 창의성 및 연구계획서의 우수성※ 구체적 평가항목은 세부시행계획에서 확정
- 과제 선정 : 평가결과 및 예산배정 기준 등을 감안하여 과제 선정※ 평가결과 60점 미만 과제는 당연 탈락
  - ☞ 교육부 및 연구재단 **우수성과**로 선정된 연구자 우대(신규과제 신청 시 기산점 부여)
  - 우수성과 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 총 1회에 한하여 적용
  - 연구책임자로 신청할 때만 인정하며, 선정평가 만점 기준 3% 이내 가산점 부여

#### □ 계속과제 관리

#### 라 연차점검

- 연차별 연구기간 종료 2개월 전 연차보고서 제출 및 한국연구재단 검토·승인 후 사업비 교부
- **연차보고서 제출대상** : 총 205과제(박사국내연수 97개, 학술연구교수 108개)
  - 박사후국내연수 97과제('19년 선정)
  - 학술연구교수 108과제('18년 선정 62개, '19년 선정 46개)

#### 마 결과보고서 제출

○ 연구과제 수행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 바 최종연구결과물 제출 및 결과평가

- 연구기간 종료 2년 후 결과평가 실시
  - 단, 연구 종료 후 2년 이내 실적기준의 최종연구결과물을 제출하는 경우 결과평가 면제

실적 기준	실적 산정 방식
되이 녀스	■ 논문 :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학술지 또는 SCI(E), A&HCI·SSCI,
지원 년수 × 논문 1편 이상	SCOPUS 등재지는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시 1편
	■ 저서·역서 : 단독 저작 1건은 업적 3편, 공동 저작 1건은 업적 2편

- ※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표기되어야 함
-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게재 또는 출판된 연구결과물은 실적인정 불가
- 결과평가 시 미흡·불량 판정 과제는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부과

#### □ 추진 일정

일정	추진내용
'20. 2월	■'20년도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 세부시행계획 확정·시행
'20. 3월	■신규과제 신청접수(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유형1)
'20. 4월	■계속과제 연차보고서 접수(박사후국내연수, 학술연구교수)
'20. 5월	■신규과제 신청접수(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유형2)
'20. 7월	■신규과제 연구개시(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유형1) ■계속과제 연구개시(박사후국내연수, 학술연구교수)
'20. 9월	■신규과제 연구개시(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유형2)

# 2 개인연구자지원사업

##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인문사회분야 풀뿌리 개인기초연구를 폭넓게 지원하여 창의적
   연구기반을 확대하고 국가 연구역량을 제고
-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연구자의 생애주기 및 인문사회분야의 **학문적 특성**을 고려한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 □ 지원근거 및 추진경과

- 지원근거
  - 「학술진흥법」제3조(정부의 책무) 및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 추진경과
  - ('89) 신진연구자지원사업 신규 시행
  - ('98) 자유공모과제지원사업으로 중견연구자지원 시작
  - ('00) 신진연구자지원사업 연령 제한 폐지, 최초 대학교원 임용 5년 이내를 대상으로 지원
  - ('06) 인문사회분야 우수학자 지원 시작
  - ('13) 신진/중견연구자지원사업 정액연구과제 연구비 단가 인상
  - ('14) 우수학자지원사업 예술·체육 분야 포함
  - ('16) 신진연구자지원사업 자격요건 확대
  - ('17) 신진/중견연구자지원시업 연차점검 간소화, 중견연구자지원시업 유형 신설
  - ('18) 연구성장단계에 따른 하위 단계 사업 수행자 별도 선정
  - ('19) 신진연구자지원사업 창의도전·소외보호 유형 신설

# □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기간	연간 연구비
신진연구자지원	조교수이상 임용 후 5년 이내인 대학교원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내 연구자	1~3년	20백만원 이내/연 (간접비 별도)
ᄌ거어그리되어	조교수이상 임용 후 5년 초과한	7년(3+4), 10년(5+5)	10백만원/연 (간접비 별도)
중견연구자지원	대학교원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초과 연구자	1~3년	20백만원 이내/연 (간접비 별도)
우수학자지원	박사학위 취득 10년 이상이고, 조교수 이상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대학 소속 또는 학회소속의 연구자	5년 (3+2)	(계속)30백만원/연 <sup>*</sup> (간접비 별도) (신규)50백만원/연 (간접비 없음)

- ※ 2016년 신진연구자지원사업 선정자부터 향후 박사후국내연수 신청 불가
- ※ 편람, 사전편찬, 교재개발, 번역, 전람회, 연주회 등을 위한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중견연구자 신규과제 지원 유형
  - (트랙1) 장기소액(10년, 연 10백만원)
  - (트랙2) 신진양성(1~3년, 연 20백만원 이내)
  - (트랙3) 중견연구일반(1~3년, 연 20백만원 이내)
- \* '19년도 이전 선정과제의 경우 연 30백만원 지급(간접비 별도)

# □ 2019년 지원 실적

(단위: 개, 백만원)

사업명	신규	과제	계속과제		계	
사람정	과제 수	연구비	과제 수	연구비	과제 수	연구비
신진연구자지원	538	11,995	253	5,750	791	17,745
중견연구자지원	527	12,016	461	10,470	988	22,486
우수학자지원	-		33	1,294	33	1,294
합계	1,065	24,011	747	17,514	1,812	41,525

## □ 주요 성과

(단위 : 건)

		'1	.6			'1	.7			'1	.8	
구분	SCI(E)	등재 (후보)	일반	저역서	SCI(E)	등재 (후보)	일반	저역서	SCI(E)	등재 (후보)	일반	저역서
신진연구자	78	847	68	13	89	814	89	30	101	893	317	32
중견연구자	73	1,058	89	41	66	782	73	42	99	975	260	29
우수학자	3	14	4	7	3	12	4	19	5	14	31	23
합계	154	1,919	161	61	158	1,608	166	91	205	1,882	608	84

## 2. 2020년도 추진계획

#### 중점 추진 방향

■ 성장단계별<sup>\*</sup> 연구가 가능하도록 신진·중견연구자지원 신규 선정과제 중일부를 하위 단계 사업을 지원받은 연구자<sup>\*\*</sup>로 별도 선정

\*(성장단계) 학문후속세대 → 신진연구자 → 중견연구자

- \*\*(신진) 학문후속세대(박사후국내연수)지원사업을 최근 3년 이내 종료한 연구자 (중견)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을 최근 3년 이내 종료한 연구자
- ※ 신청 대상자를 확대하여 연계지원을 강화
- 연구 의욕이 왕성한 **신진연구자**가 새로운 학문분야에 도전하고 창의적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창의도전·소외보호유형 지원**\*
  \* 신규 선정과제 중 10% 내외 지원
- 소외분야 연구 장려를 위해 중견연구자 신규과제 예산의 3% 내외를 별도로 분리하여 지원
- 우수학자지원사업 연구비 상향 조정 및 그랜트방식<sup>\*</sup> 도입
  - \* (그랜트방식) 별도의 정산절차 없이 지원하는 방식
  - ※ 50백만원/연(간접비 없음)

#### □ 지원 규모

(단위: 개, 백만원)

TIOLER	신규	과제	계속	과제	계	
사업명	과제 수	연구비	과제 수	연구비	과제 수	연구비
신진연구자지원	429	11,163	285	6,582	714	17,745
중견연구자지원	503	13,075	423	9,411	926	22,486
우수학자지원	8	400	23	902	31	1,302
합계	940	24,638	731	16,895	1,671	41,533

# □ 신규과제 선정

#### 가 시신청자격

- (공통) 연구책임자는 연구비중앙관리가 가능한 국내기관 소속 연구자로 한정
- (신진연구자) 최근 5년간 연구실적이 3편 이상인 대학·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자로 신청마감일 기준 최초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임용된 지 5년 이내인 국내대학 소속 교원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내 연구자
  - ※ (학문후속양성) 최근 3년 이내 박사후국내연수지원 수행을 종료한 연구 책임자로서, 상기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연구자

- (중견연구자) 최근 5년간 연구실적이 5편 이상인 대학·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자로 신청마감일 기준 최초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임용된 지 5년 초과인 국내대학 소속 교원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초과 연구자
  - ※ (신진양성\_트랙2) 최근 3년 이내 신진연구자지원 수행을 종료한 연구책임자로서, 상기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연구자

#### < 연구업적 산정 방식 >

- 업적산정기간 : 2015. 1. 1.부터 온라인신청 마감일 현재까지
- 논문 :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학술지 또는 SCI(E), A&HCI·SSCI, SCOPUS 등재지에 게재된 논문은 업적 1편
  - ※ 공동저자(공동저자 수와 무관)로 참여한 논문도 업적으로 산정 가능
- 저서·역서 : 단독 저작 1건은 업적 3편, 공동 저작 1건은 업적 2편
- 특허 : 특허 1건은 업적 1편
- (우수학자) 세부시행계획 작성 시 추후 수립 예정

#### 나 시 신청 및 참여제한

- 본 사업 내에서는 1인이 1과제에 한하여 신청 및 참여할 수 있음
- "상반기 선정 사업" 내에서는 연구책임자로 1과제만 신청 가능※ 다만, 우수학자지원의 경우 1책3공 적용 제외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3개 이내로 하며,그 중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1과제로 한정함
  -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제18조
- 온라인 신청 마감일 현재 제재를 받고 있는 연구자는 신청불가
- 연구과제 신청이 완료된 이후라도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 등이 학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 연구 수행 과제 수 초과 등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최종 선정에서 제외되며, 선정 이후에도 과제 지원중단 조치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학술연구지원사업 다수과제에 참여 중인 연구자 및 대학 등이 학술 진흥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한 과제에 대해 사업비 지급 중지가 확정되는 경우 타 과제에 대해서도 사업비 지급 중지 및 참여제한 ('18년 신규선정 과제부터 적용)

## 다 선정평가

○ 평가절차 및 단계\*

①요건심사	② <b>전공평</b> 가		③종합평가
신청요강의 신청자격 ⇒ 충족여부검토	온라인 평가(신진연구일반, 중견 트랙3) 토론평가(학문후속양성 창의도전 소외보호, 중견 트랙1,2) (필요 시 PM Review 실시)	$\Rightarrow$	평가 결과 종합검토 및 최종과제 선정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 \* 우수학자지원사업 평가절차 추후 수립 예정
- 평가 내용 : 연구의 창의성, 연구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계획서의 우수성 등 ※ 구체적 평가항목은 세부시행계획에서 확정
  - ※ Blind평가를 실시하는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은 창의성 위주평가
  - ※ Open평가를 실시하는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은 연구역량 위주평가
- 과제 선정 : 평가결과 및 예산배정 기준 등을 감안하여 과제 선정※ 평가결과 60점 미만 과제는 당연 탈락
- ☞ 교육부 및 연구재단 우수성과로 선정된 연구자 우대(신규과제 신청 시 가산점 부여)
  - 우수성과 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 총 1회에 한하여 적용
  - 연구책임자로 신청할 때만 인정하며, 선정평가 만점 기준 3% 이내 가산점 부여

#### □ 계속과제 관리

#### 가 연차점검

- 연차별 연구기간 종료 2개월 전 연차보고서 제출 및 한국연구재단 검토·승인 후 사업비 교부
- 연차보고서 제출대상 : 총 704과제
  - 신진 285과제('18년 선정 52개, '19년 선정 233개)
  - 중견 413과제('18년 선정 129개, '19년 선정 284개)
  - 우수학자 6과제('16년 선정 6개)

# 나 단계평가

#### ○ 중견연구자지원사업

- **평가대상** : '17년 선정 10과제(트랙1)

- 평가방식 : 단계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

- 평가내용

구분	평가구분	평가내용	비고
1단계		■ 단계별 연구계획 대비 수행실적 및 다음 단계 연구계획 평가	전공평가단
2단계	종합평가	■ 1단계 평가 결과 검토 및 지원여부 최종 결정	종합평가단

####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기수행 연구 실적	연구수행의 당초 목표대비 진도 실적	35
(70)	연구수행결과 관련 실적	35
향후 연구계획	기수행 연구내용과의 연관성	10
및 내용	다음 단계 연구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	15
(30)	최종 연구목표 달성 가능성	5
	100	

※ 점검항목 및 내용 등은 세부시행계획에서 변경될 수 있음

## - 평가결과 및 조치

점수	등급	조치
70점 이상	PASS	계속지원
70점 미만	FAIL	지원중단

- 점검결과 활용 : 다음단계 지원여부 결정

※ 지원중단 결정시「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및 학술활동결과물 제출 관련 의무 이행

#### ○ 우수학자지원사업

- 평가대상 : '17년 선정 16과제

- 평가방식 : 단계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

#### - 평가내용

단계	구분	점검 내용	비고
1단계	전공평가 (온라인)	■ 단계별 연구계획 대비 수행실적 및 다음 단계 연구계획 평가	전공평가단
2단계	종합평가	■1단계 결과 검토 및 지원여부 최종결정	종합평가단

#### - 평가항목

점검항목	점검지표	비고
기 수행 연구 실적	연구수행의 당초 목표대비 진도 실적	40
	연구수행결과 관련 실적	40
향후 연구계획 및 내용	기 수행 연구내용과의 연관성	5
	차단계 연구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	10
	최종 연구목표 달성 가능성	5
	100	

※ 점검항목 및 내용 등은 세부시행계획에서 변경될 수 있음

#### - 평가결과 및 조치

점수	등급	조치
70점 이상	PASS	계속지원
70점 미만	FAIL	지원중단

- 점검결과 활용 : 다음단계 지원여부 결정
  - ※ 지원중단 결정시「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및 학술활동결과물 제출 관련 의무 이행

# 다 결과보고서 제출

○ 연구과제 수행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 최종연구결과물 제출 및 결과평가

○ 연구기간 종료 2년 후 결과평가 실시

라

- 단, 연구 종료 후 2년 이내 실적기준의 최종연구결과물을 제출하는 경우 결과평가 면제
- 신진, 중견 및 우수논문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기준

실적 기준	실적 산정 방식
지원 년수 × 논문 1편 이상	■ 논문 :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학술지 또는 SCI(E), A&HCI·SCI, SCOPUS 등재지는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시 1편 ■ 저서·역서 : 단독 저작 1건은 업적 3편, 공동 저작 1건은 업적 2편

- ※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표기되어야 함
-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게재 또는 출판된 연구결과물은 실적인정 불가
- 우수학자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기준

실적 기준	실적 산정 방식
출판물 1권	<ul> <li>● 해외 저명 출판사의 출판 권장(국내 출판의 경우, 학문 영역별 권위 있는 출판사)</li> <li>- 영문 저서출판(인문, 예술·체육학 분야: 권장 / 사회과학분야: 필수)</li> <li>- 사회과학의 경우 영어 이외의 언어로 출판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한국연구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li> <li>■ 출판물 : 전문 학술저서, 단독</li> <li>- 저서 출판을 위한 출판사 선정은 저자의 선택에 위임하되, 학문 영역별 권위 있는 출판사를 권장함</li> </ul>

-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출판된 연구결과물은 실적인정 불가
- 결과평가 미흡·불량 과제는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부과\*
  - \* (개인연구) 불량 판정과제의 경우에는 연구비 일부 환수(`18년 신규선정과제부터 적용) 조치

# □ 추진 일정

일정	추진내용
'20. 1월	■ '20년도 개인연구자지원사업 세부시행계획 확정·시행 ■신규과제 신청 공고(신진, 중견, 우수학자) ■계속과제('17년도 선정 5.1.개시) 단계보고서 접수
'20. 2월	■신규과제 신청접수(신진, 중견) ■계속과제 연차(신진) 및 단계보고서(우수학자) 접수
'20. 3월	■신규과제 선정평가 실시(신진, 중견) ■계속과제 단계평가 실시(우수학자)
'20. 4월	■신규과제 선정평가 실시(신진, 중견) ■계속과제 연차(중견) 및 단계보고서(중견) 접수
'20. 5월	■ 신규과제(신진) 및 계속과제(신진, 우수학자) 연구개시 ■ 신규과제 선정평가 실시(중견) ■ 계속과제 단계평가 실시(중견)
'20. 6월	■신규과제 선정평가 실시(중견)
'20. 7월	■ 신규과제(중견) 및 계속과제(중견) 연구개시

# 3 명저번역지원사업

#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동·서양의 세계적인 학술명저 번역을 통해 번역의 모범적 기반 마련 및 학술성과의 세대 간 전수 지원
- 국가 차원의 번역 지원으로 기초학문분야의 번역 인프라를 강화하고, 일반 대중의 동·서양 명저에 대한 접근성 제고

#### □ 지원근거 및 추진경과

- 지원근거
  - 「학술진흥법」 제3조(정부의 책무) 및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 추진경과
  - ('98) 동서양학술명저번역지원사업으로 시작
  - ('02) 연구비 신청제한액 폐지
  - ('03) 번역연구기간을 1~2년으로 확대
  - ('07) 번역 업적 산정기간 폐지
  - ('08) 간접비 지원 중단, 과제수행자의 동 사업 신규과제 신청 제한 실시
  - ('11) 번역 전담 출판사 동서양 분야별 복수 선정
  - ('13) 명저번역총서 공유 및 확산을 위한 독후감 대회 개최
  - ('15) 번역연구기간을 2~3년으로 확대
  - ('17) 지정도서 목록 선정을 최근 3년간 추천도서로 확대
  - ('18) 명저번역지원사업 연차점검 간소화
  - ('19) 중요번역도서의 우선지원을 위한 해외학술고전(Top-Down) 선정
  - ('20) 보고서 제출을 통합하여 행정간소화 및 연구자 편의 제고

#### □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사업명	지원대상 <sup>*</sup>	지원기간	연간 연구비
명저번역지원	단독번역출판물 또는 4인이하 공동번역 출판물이 1종 이상인 연구자	2~3년	지정도서별 분량과 난이도를 고려하여 지원 <sup>**</sup>

- \* 이공분야 중 순수학문은 지원가능(단, 심사요청학문분야는 '연구분야분류표'중 인문사회 全 분야(예술·체육학 포함) 중 선택)
- \*\* 지정도서 목록 및 적정 번역연구비는 조사·검토를 거쳐 별도 공고
- ※ 번역권 체결 비용 및 출판지원비 별도 지급

#### □ 2019년 지원 실적

(단위: 개, 백만원)

사업명	신규	신규과제 계속과제 계			#	
사태경	과제 수	연구비	과제 수	연구비	과제 수	연구비
 명저번역지원	54	944	23	304	77	1,848

※ 번역권 체결 및 출판지원비 : 600백만원

#### □ 주요 성과

니어대			출	간완료 도	서		
사업명	'01~'13	'14	'15	'16	'17	'18	'19
плнито	342종	45종	22종	26종	24종	20종	10종
명저번역지원	(594권)	(76권)	(57권)	(63권)	(37권)	(50권)	(22권)

#### 2. 2020년도 추진계획

#### 중점 추진 방향

- 주요 학회 등 **학계의 집중적인 의견 수렴**을 통하여 각 학문분야의 사상적 줄기가 되는 주요 명저를 도출하여 **해외학술고전으로 선정** (Top-Down)하고, 우선 지원 실시
- **번역가 및 출판사 관계자**를 지정도서 선정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포함하여 **전문성 및 대표성 강화**
- 최신의 해외이론 및 우수한 학문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외학술서 번역 지원
- 번역권 체결이 필요한 도서라도 학술적 가치가 높은 도서는 지원
- **보고서 제출을 통합**\*(종료평가보고서 및 결과보고서)하여 **행정** 간소화 및 연구자 편의 제고
  - \* 세부변경사항은 세부시행계획에서 수립

#### □ 지원 규모

(단위: 개. 백만원)

사업명	신규	과제	계속과제			계		
	과제 수	연구비	과제 수	연구비	과제 수	연구비		
명저번역지원	25	439	59	861	84	1,900*		

\* 번역권 체결 및 출판지원비 600백만원 포함

#### □ 신규과제 선정

#### 가 신청자격

#### ○ 신청자격

- 「학술진흥법」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연구자 중 단독 번역출판물 또는 4인 이하의 공동 번역출판물이 1종 이상인 자
- 지정도서\*에 대해서만 번역지원이 가능하며, 한국어번역권 체결이 필요 없는(Public Domain) 도서를 우선적으로 지원(단, 학술 가치가 높은 도서는 번역권 체결이 필요하더라도 지정도서에 포함
  - \* 학문분이별 주요 학회 및 일반연구자의 추천도서를 대상으로 전문가 그룹의 검토를 통해 지정도서 선정(일부 번역가 및 출판사 관계자를 자문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음)

# 나 신청 및 참여제한

- 본 사업 내에서는 1인이 1과제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상반기 선정 사업" 내에서는 연구책임자로 1과제만 신청 가능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3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1과제로 한정함
- 연구과제 신청이 완료된 이후라도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등이 학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 연구 수행 과제 수 초과 등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최종 선정에서 제외되며, 선정 이후에도 과제 지원중단 조치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온라인 신청 마감일 현재 제재를 받고 있는 연구자는 신청불가
- 학술연구지원사업 다수과제에 참여 중인 연구자 및 대학 등이 학술진흥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한 과제에 대해 사업비 지급 중지가 확정되는 경우 타 과제에 대해서도 사업비 지급 중지 및 참여제한 ('18년 신규선정 과제부터 적용)
  - ※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시행계획에서 확정

#### 다 선정평가

○ 평가절차

①요건심사		②전공평가		③종합평가
신청요강의 신청자격		ᆒᆸᆑᄀ		평가 결과 종합검토 및
충족여부검토	⇒	패널평가	$\Rightarrow$	최종과제 선정
한국연구재단	_	한국연구재단	_	한국연구재단

- ※ 요건심사 시 번역권 체결 및 기 지원/중복도서 여부 확인
- **평가내용** : 번역 업적의 수준 및 번역능력의 우수성
  - ※ 구체적 평가항목은 세부시행계획에서 확정

#### □ 계속과제 관리

#### 가 연차점검

- 연차별 연구기간 종료 2개월 전 연차보고서 제출 및 한국연구재단 검토·승인 후 사업비 교부
- **연차보고서 제출대상** : 59과제('18년 선정 5과제, '19년 선정 54과제)

#### 나 결과보고서 제출 및 종료평가

- **평가대상** : 17과제('17년 선정 4과제, '18년 선정 13과제)
- ㅇ 평가시기 : 연구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평가
  - ※ 2020년부터 종료평가보고서 및 결과보고서를 통합하여 제출(제출일자 : 연구종료일까지)

○ **평가방식** : 결과보고서 및 작성 원고(100% 완성본)를 바탕으로 토론평가 추진

평가항목		평가내용
	원문번역의 충실도	■원문번역의 정확성 ■원문번역의 완결성 ■용어 및 문체의 적절성(특수어, 복합사유어)
번역능력의 우수성	가독성과 완성도	■ 번역의 가독성(자연스럽고 정확한 우리말 표현) ■고유명사 및 용어표기의 통일성
	역주 등 참고사항	■역주 및 역자해설의 적절성과 충실성 ■기타 참고사항의 구비(용어집, 도표, 지도 등) ■기존번역과의 차별성(기존 번역본이 있는 경우)

- ※ 평가항목 및 내용 등은 세부시행계획에서 변경될 수 있음
- 평가결과 및 조치(※ '19년 이전 선정 과제까지 적용)

결과	조치
출판적합	출판 승인
출판유보	6개월간의 수정 기간을 주어 재평가
출판부적합	출판 미승인

- **결과활용** : 실적이 과도하게 불량하여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중단<sup>\*</sup>
  -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연구결과보고 및 연구결과물 제출 관련 의무 이행(해당 연구에 대한 논문 제출)
- **평가결과 및 조치(※** '20년 신규선정 과제부터 적용)

결과	조치
출판적합	출판 승인
출판유보	12개월간의 수정 기간을 주어 재평가

- 출판유보인 경우 12개월의 수정 기회 부여 및 재평가 실시
- 재평가 결과 출판부적합 과제는 사업비 환수 및 5년간 학술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제외(단, 5년 이내 수정 완성된 원고 제출시(1회에 한정)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출판 및 참여제한 해지 등 검토)

#### 다 최종연구결과물 제출 및 결과평가

- ㅇ 연구기간 종료 2년 후 결과평가 실시
  - 단, 연구 종료 후 2년 이내 최종연구결과물을 제출하는 경우 결과 평가 면제
  - 결과물 : (출판적합) 출판완료 도서, (출판부적합) 관련 논문 제출
  - 결과평가 미흡·불량 과제는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부과\*
    - \* (개인연구) 불량 판정과제의 경우에는 연구비 일부 환수(18년 신규선정 과제부터 적용) 조치
- 출판적합(출판유보 후 재평가에 따른 출판적합 과제 포함)의 경우 한국연구재단 '명저번역 지정출판사'와 연계하여 출판 지원 (연구 종료 후 2년 이내에 출간 완료)
- 번역도서 출간 이후 지정출판사를 통하여 발행부수, 판매부수 관리

#### □ 추진 일정

일정	추진내용
'20. 1월	■ '20년도 명저번역지원사업 세부시행계획 확정·시행 ■ '21년도 지정도서 추천서 상시 접수 시작
'20. 2월	■ 지정도서 선정 및 공고 ■ 신규과제 신청공고 및 안내 ■ 계속과제('18년도 선정) 연차보고서 접수
'20. 3월	■ 신규과제 신청접수
'20. 4월	<ul> <li>신규과제 선정평가</li> <li>종료과제('17년도, '18년도 선정) 결과보고서 접수</li> <li>계속과제('19년도 선정) 연차보고서 접수</li> </ul>
'20. 5월	<ul> <li>신규과제 선정평가</li> <li>종료평가('17년도, '18년도 선정)실시</li> <li>계속과제('18년도 선정) 연구개시</li> </ul>
'20. 6월	■ 신규과제 선정평가 ■ 종료과제('17년도, '18년도 선정) 평가 결과통보 및 출판지원
'20. 7월	■ 신규과제 및 계속과제 ('19년도 선정) 연구개시
'20. 11월	■ '21년도 지정도서 추천서 접수

# 4 저술출판지원사업

#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우수한 인문·사회과학자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저술·발간을 지원**함으로써 학술성과 및 연구경험을 축적
- **연구성과의 소통가능성을 제고**하여 대중과 학계의 교류·이해에 기여

#### □ 지원근거 및 추진경과

- 지원근거
  - 「학술진흥법」제3조(정부의 책무) 및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 추진경과
  - ('07) 인문저술지원사업 신설
  - ('10) 저술성과확산 분야 신규 추진
  - ('11) 저술출판지원사업으로 사업명 변경, 우수저서사후지원 시범 실시(1년)
  - ('12) 저술지원(舊 인문저술지원)으로 지원 분야 명칭 변경
  - ('13) 연구자 친화적 연구관리를 위한 신청 및 참여제한 완화
  - ('14) 저술의 다양성을 위한 지원기간 조정(3년 → 2~3년)
  - ('15) 저술성과확산 및 저술사후지원을 저술지원으로 통합
  - ('16) 지원분야를 기존 학술서에서 학술서 및 교양서로 확대지원
  - ('18) 저술출판지원사업 연차점검 간소화
  - ('19) 보고서 제출을 통합하여 행정간소화 및 연구자 편의 제고

# □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기간	연간 연구비
저술출판지원	「학술진흥법」제2조 제5호의 연구자	2~3년	10백만원/연

#### □ 2019년 지원 실적

(단위:개,백만원)

사업명	신규	신규과제 계속과제 계			1	
	과제 수	연구비	과제 수	연구비	과제 수	연구비
저술출판지원	-	-	292	2,940	292	2,940

#### □ 주요 성과

(단위 : 권)

TIOLE	출간완료 도서							
사업명	'13	'14	'15	'16	'17	'18	'19	
저술출판지원	123	137	134	166	140	158	176	

#### 2. 2020년도 추진계획

#### 중점 추진 방향

- **보고서 제출을 통합**\*(종료평가보고서 및 결과보고서)하여 **행정 간소화 및 연구자 편의 제고** 
  - \* 세부변경사항은 세부시행계획에서 수립
- **우수학술도서 선정 및 보급**을 통하여 **인문·사회과학분야 성과물의** 사회적 활용에 기여

## □ 지원 규모

(단위 : 개, 백만원)

사업명	신규과제		계속	과제	계		
사합당	과제 수	연구비	과제 수	연구비	과제 수	연구비	
 저술출판지원	100	1,000	71	710	171	1,710	

#### □ 신규과제 선정

#### 가 신청자격

○ 「학술진흥법」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연구자 중 최근 5년간 연구 실적이 3편 이상인 자

#### 나 신청 및 참여제한

- 본 사업 내에서는 1인이 1과제에 한하여 신청 및 참여할 수 있음
- "상반기 선정 사업" 내에서는 연구책임자로 1과제만 신청 가능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3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1과제로 한정함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제18조
- 온라인 신청 마감일 현재 제재를 받고 있는 연구자는 신청불가
- 연구과제 신청이 완료된 이후라도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 등이 학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 연구 수행 과제 수 초과 등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최종 선정에서 제외되며, 선정 이후에도 과제 지원중단 조치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학술연구지원사업 다수과제에 참여 중인 연구자 및 대학 등이 학술진흥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한 과제에 대해 사업비 지급 중지가 확정되는 경우 타 과제에 대해서도 사업비 지급 중지 및 참여제한('18년 신규선정 과제부터 적용)
  - ※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시행계획에서 확정

# 다 선정평가

ㅇ 평가절차 및 단계

① <b>요건심사</b>		②전공평가		③종합평가
신청요강의 신청자격 충족여부검토	$\Rightarrow$	패널평가	$\Rightarrow$	평가 결과 종합검토 및 최종과제 선정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 평가 내용: 저술계획 및 연구역량의 우수성 등※ 구체적 평가항목은 세부시행계획에서 확정
- 과제 선정 : 평가결과 및 예산배정 기준 등을 감안하여 과제 선정※ 평가결과 60점 미만 과제는 당연 탈락

## □ 계속과제 관리

# 라 연차점검

- 연차별 연구기간 종료 2개월 전 연차보고서 제출 및 한국연구재단 검토·승인 후 사업비 교부
- 연차보고서 제출대상 : 71과제(18년 선정)

# 마 결과보고서 제출 및 종료평가

- 평가대상 : 222과제('17년 선정 168과제, '18년 선정 54과제)
  - '17년 선정 : (학술서) 147과제, (교양서) 21과제
  - '18년 선정 : (학술서) 43과제, (교양서) 11과제
- 평가시기 : 연구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평가
  - ※ 2020년부터 종료평가보고서 및 결과보고서를 통합하여 제출(제출일자 : 연구종료일까지)
- 평가방식 : 결과보고서 및 작성 원고(100% 완성본)를 바탕으로 토론평가 추진

평가항목	평가내용			
	학문발전 공헌도			
출판적합 여부 평가	타 학문에 대한 파급효과			
	가독성, 통일성			

※ 평가항목 및 내용 등은 세부시행계획에서 변경될 수 있음

○ 평가결과 및 조치(※ '19년 이전 선정 과제까지 적용)

결과	조치
출판적합	출판 승인
출판유보	6개월간의 수정 기간을 주어 재평가
출판부적합	출판 미승인

- 출판부적합인 경우 관련 논문 제출 및 동 사업 참여제한\*, 논문 미제출시 동 사업 참여제한과 별개로 결과평가 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참여제한 조치 여부 확정
  -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연구결과보고 및 연구결과물 제출 관련 의무 이행(해당 연구에 대한 논문 제출) 및 향후 5년간 저술출판지원사업에 한하여 참여 제한(저술출판지원사업의 참여제한 조건은 '17년 선정 과제부터 적용)
- 평가결과 및 조치(※'20년 신규선정 과제부터 적용)

결과	조치
출판적합	출판 승인
출판유보	12개월간의 수정 기간을 주어 재평가

- 출판유보인 경우 12개월의 수정 기회 부여 및 재평가 실시
- 재평가 결과 출판부적합 과제는 사업비 환수 및 5년간 학술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제외(단, 5년 이내 수정 완성된 원고 제출시(1회에 한정)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출판 및 참여제한 해지 등 검토)

## 바 최종연구결과물 제출 및 결과평가

- ㅇ 연구기간 종료 2년 후 결과평가 실시
  - 단, 연구 종료 후 2년 이내 최종연구결과물을 제출하는 경우 결과 평가 면제
  - 결과물 : (출판적합) 출판완료 도서, (출판부적합) 관련 논문 제출
  - 결과평가 미흡·불량 과제는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부과\*
    - \* (개인연구) 불량 판정괴제의 경우에는 연구비 일부 환수(18년 신규선정 괴제부터 적용) 조치
- 출판적합(출판유보 후 재평가에 따른 출판적합 과제 포함)의 경우 연구 종료 후 2년 이내에 출간완료도서 및 출판계약서 제출

#### □ 추진 일정

일정	추진내용
'20. 1월	■'20년도 저술출판지원사업 세부시행계획 확정·시행 ■신규과제 신청요강 공고
'20. 2월	■신규과제 신청접수 및 선정평가 실시 ■계속과제 연차보고서 접수(5월 연구개시 과제)
'20. 4월	■종료과제 결과보고서 접수
'20. 5월	■종료평가 실시 ■신규과제 연구개시(5.1. 개시) ■계속과제 연구개시(5.1. 개시)
'20. 6월	■종료과제 결과보고서 평가 결과통보

#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2~3인의 공동연구를 통한 연구의 시너지효과 발생 및 국가·사회적 문제해결에 필요한 방안 제시
- **개인연구로 축적된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공동연구 기반 확보**

#### □ 지원근거 및 추진경과

- 지원근거
  - 「학술진흥법」제3조(정부의 책무) 및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 추진경과
  - ('98) 자유공모과제지원사업으로 시작
  - ('99) 선도연구자지원, 협동연구지원사업 추가 지원
  - ('02) 순수기초연구그룹지원 추가지원
  - ('06) 인문사회 기초연구과제지원사업 신설
  - ('10) 일반기초연구지원사업과 토대기초연구지원사업 분리
  - ('12)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으로 명칭 변경
  - ('15) 연구팀 역량 및 우수성 평가를 위해 '오픈(Open) 평가'실시
  - ('19)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내 융복합연구 유형 신설 및 연차점검 간소화 ※ 기존 학제간융합연구지원과 통합·개편
  - ('20)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내 해외연구 유형 신설 ※ 기존 글로벌연구네트워크지원(GRN) 사업과 통합·개편

## □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구분	지원대상	참여요건 (연구책임자 포함)	지원기간	연간 연구비 (간접비 별도)
이바고도		2인	1 21=	50백만원 이내 / 연
일반증공	일반공동 (연구책임자)	3인 이상	1~3년	100백만원 이내 / 연
용복합연구 <sup>*</sup>	연구업적이 5편 이상이 있는 대학·연구기관 등에	5인 이상	3년	150백만원 이내 / 연
융합연구 총괄센터 <sup>**</sup>	소속된 연구자	대학부설연구소	3년	130백만원 이내 / 연
해외연구		2인 이상	2~3년	80백만원 이내 / 연

<sup>\*</sup> 융복합연구유형은 연구팀 구성 시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원(일반공동연구원, 박사급연구원, 전임연구인력)을 포함하여 인문사회분이와 이공분야 중 어느 한 분이의 전공자 비율 2/3 초과 금지

- \*\* 융합연구총괄센터는 연구팀 구성 시 전공분야 비율 제한에서 제외함
- ※ 융복합연구팀 구성 시 연구책임자는 인문사회분이(예술·체육학 포함) 전공자만 신청 가능
- ※ 편람. 사전편찬. 교재개발. 번역. 전람회. 연주회 등을 위한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유형별 지원계획은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

#### □ 2019년 지원 실적

(단위: 개, 백만원)

사업명	신규	과제	계속	과제	계		
<u> </u>	과제 수	연구비	과제 수	연구비	과제 수	연구비	
일반공동	129	11,165	131	11,156	260	22,321	
융복합연구	34	5,765	-	-	34	5,765	
합계	163	16,930	131	11,156	294	28,086	

#### □ 주요 성과

(단위 : 건)

	'16				'17			'18				
구분	SCI(E)	등재 (후보)	일반	저역서	SCI(E)	등재 (후보)	일반	저역서	SCI(E)	등재 (후보)	일반	저역서
일반공동 연구지원	78	847	68	13	46	541	46	43	50	646	381	36

## 2. 2020년도 추진계획

#### 중점 추진 방향

- 해외연구 유형을 신설하여, 해외 우수 연구자들과 공동연구를 통한 세계 수준의 연구 성과 창출 지원
  - ※ 기존 글로벌연구네트워크(GRN) 사업과 통합·개편
- 박사급 비전임연구자의 공동연구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업적 요건 완화
  - ※ 최근 5년간 업적 5편에서 3편으로 완화
- 연구팀 역량 및 우수성 평가를 위한 '오픈(Open) 평가' 정착
-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18년 선정 계속과제(3년)의 **연차별 지원기간 조정**\*
  - \* 총 지원기간은 변동 없음('18년 12개월, '19년~'20년 각 10개월, '21년 4개월)

#### □ 지원 규모

(단위 : 개, 백만원)

TOUR	신규	과제	계속	과제	계		
사업명	과제 수	연구비	과제 수	연구비	과제 수	연구비	
일반공동	34	3,162	150	13,200	184	16,362	
융복합연구	10	1,950	34	5,856	44	7,806	
융합연구총괄센터	1	179	-	-	1	179	
해외연구	35	3,570	-	-	35	3,570	
합 계	80	8,861	184	19,056	264	27,917	

#### □ 신규과제 선정

#### 가 신청자격

- 해당유형: 일반공동, 융복합연구, 융합총괄센터
- 0 연구자 참여자격

Ç	역할	참여자격	연구업적			
연구책임자		회스지층비 제3포 제C호	최근 5년간 연구업적이 5편			
7 =	일반공동 연구원	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 연구자	이상이 있는 대학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자			
공동 연구원 	박사급 연구원	타 기관 및 타 과제에서 인건비를 받지 않는 박사학위 소지 연구자	최근 5년간 연구업적이 3편 이상이 있는 대학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자 <sup>*</sup>			

- \* 박사급 비전임연구원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 요건 완화
- ※ 연구책임자는 연구비중앙관리가 가능한 국내기관 소속 연구자이어야 함

#### < 연구업적 산정 방식 >

■ 업적산정기간 : 2015. 1. 1.부터 온라인신청 마감일 현재까지

■ 논문 :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학술지 또는 SCI(E), A&HCI·SSCI, SCOPUS 등재지에 게재된 논문은 업적 1편

※ 공동저자(공동저자 수와 무관)로 참여한 논문도 업적으로 산정 가능

■ 저서·역서 : 단독 저작 1건은 업적 3편, 공동 저작 1건은 업적 2편

■ 특허 : 특허 1건은 업적 1편

ㅇ 해당유형: 해외연구

ㅇ 연구자 참여자격

구분	역할		참여자격	업적요건		
	연구책임자		학술진흥법	최근 5년간 연구업적 5편 이상		
국내	공동	일반공동 연구원	제2조 제5호 연구자	※ 국내연구책임자 SSCI, A&HCI, SCOPUS급         학술지 최소 1편 이상 또는 단독 저서         1편 이상		
연구원 박사급		박사급 연구원	타 기관 및 타 과제에서 인건비를 받지 않는 박사학위 소지 연구자	최근 5년간 연구업적 3편 이상		
해외	해외공동	동연구원 <sup>*</sup>	대학교원 또는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원	최근 5년간 연구업적 1편 이상, 국제 수준(SCI, SSCI, A&HCI, SCOPUS) 학술지 또는 전략적 지역 <sup>*</sup> 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간행된 학술지 논문 인정 ※ 전략적 지역 외 지역인 경우 국제수준 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필수		

- \* 공동연구자 1인 이상은 반드시 연구 대상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여야 함
- \*\* 신북방, 신남방,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 < 연구업적 산정 방식 >

■ 업적산정기간 : 2015. 1. 1.부터 온라인신청 마감일 현재까지

■ 논문 :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학술지 또는 SCI(E), A&HCI·SSCI, SCOPUS 등재지에 게재된 논문은 업적 1편

※ 공동저자(공동저자 수와 무관)로 참여한 논문도 업적으로 산정 가능

■ 저서·역서 : 단독 저작 1건은 업적 3편, 공동 저작 1건은 업적 2편

■ 특허 : 특허 1건은 업적 1편

### 나 신청 및 참여제한

- 본 사업 내에서는 1인이 1과제에 한하여 신청 및 참여할 수 있음
- "상반기 선정 사업" 내에서는 연구책임자로 1과제만 신청 가능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3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1과제로 한정함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제18조
- 온라인 신청 마감일 현재 제재를 받고 있는 연구자는 신청불가
- 연구과제 신청이 완료된 이후라도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학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 연구 수행 과제 수 초과 등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최종 선정에서 제외되고, 선정 이후에도 과제 지원중단 조치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공동연구원이 상기 사항에 해당할 경우 해당 공동연구원을 교체함
- 학술연구지원사업 다수과제에 참여 중인 연구자 및 대학 등이 학술 진흥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한 과제에 대해 사업비 지급 중지가 확정되는 경우 타 과제에 대해서도 사업비 지급 중지 및 참여제한 ('18년 신규선정 과제부터 적용)

#### 다 선정평가

○ 평가절차 및 단계

① <b>요건심사</b>		<b>②전공평가</b>		③종합평가
신청요강의 신청자격 충족여부검토	$\Rightarrow$	<u>패널평가</u> 발표평가 (융합연구총괄센터)	$\Rightarrow$	평가 결과 종합검토 및 최종과제 선정
한국연구재단	-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 **평가내용** : 연구의 창의성 및 연구계획의 우수성 등 ※ 구체적 평가항목은 세부시행계획에서 확정
- 과제선정 : 평가결과 및 예산배정 기준 등을 감안하여 과제 선정
   ※ 평가결과 60점 미만 과제는 당연 탈락

#### □ 계속과제 관리

### 가 연차점검

- 연차별 연구기간 종료 2개월 전 연차보고서 제출 및 한국연구재단 검토·승인 후 사업비 교부
- **연차보고서 제출대상** : 총 184과제('18년 선정 42과제, '19년 선정 142과제)

### 나 결과보고서 제출

○ 연구과제 수행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 다 최종연구결과물 제출 및 결과평가

- 연구기간 종료 2년 후 결과평가 실시
  - 단, 연구 종료 후 2년 이내 실적기준의 최종연구결과물을 제출하는 경우 결과평가 면제
  - 결과물 제출 기준

실적 기준	실적 산정 방식
	■ 논문 :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학술지 또는 SCI(E),
지원 년수 ×	A&HCI·SSCI, SCOPUS 등재지는 주저자(제1저자 또는
논문 2편 이상	교신저자)시 1편
	■ 저서·역서 : 단독 저작 1건은 업적 3편, 공동 저작 1건은 업적 2편

- ※ 연구참여자(보조원 제외) 전원이 1편 이상 저자로 참여하여야 함(연구책임자는 최소 1편 이상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표기되어야 하며, 연구과제에서 사직한 연구 참여자는 그 참여기간이 6개월 이상 인 경우 1편 이상 저자로 참여하여야 함)
  - \* 6개월 이상 참여한 공동연구원이 없을 경우 참여 개월 수가 가장 긴 공동연구원에 의무 부과
-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게재 또는 출판된 연구결과물은 실적인정 불가
- 결과평가 시 미흡·불량 판정 과제는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부과

### □ 기타 사항

-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18년도 선정 계속과제의 경우 연차별 지원기간 일부 조정
  - ※ 총 지원기간 변동 없음 ('18년 12개월 / '19~'20년 각 10개월 / '21년 4개월)

### □ 추진 일정

일정	추진내용
'20. 1월	■'20년도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세부시행계획 확정·시행 ■신규과제 신청 공고
'20. 2월	■신규과제 신청접수 ■신규과제 선정평가 실시
'20. 4월	■계속과제('18년, '19년도 선정 7.1.개시) 연차보고서 접수
'20. 7월	■ 신규과제 연구개시 ■ 계속과제('18년, '19년도 선정 7.1.개시) 연구개시

# 학제간융합연구지원**사업**

###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상상력과 통찰력, 예술적 창조성과 과학적 합리성 등을 융합하여 복잡한 사회문제에 대한 창조적이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 마련

#### < 세부사업 설명 >

◇ 씨앗형 : 아젠다 발굴 위주의 기획 사업

◇ 새싹형 : 중장기 학제간 융합 연구 지원 사업

◇ 융합연구총괄센터 : 융합연구를 수행하는 연구팀 협력 및 자료축적 등 담당

#### □ 지원근거 및 추진경과

- 지원근거
  - 「학술진흥법」제3조(정부의 책무) 및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 추진경과
  - ('09) 학제간융합연구지원사업 시작
  - ('11) 산학협력형 과제 시범 추진 및 융합연구총괄센터 운영
  - ('15) 기존 과제유형(씨앗형 등) 수행 없이 새싹형 진입 허용 및 새싹형 유형 연구비 단가 상향(180백만원→200백만원)
  - ('19) 학제간융합연구지원사업을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으로 통합 및 연차점검 간소화
    - ※ 계속과제에 한해 지원하며, 신규과제는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에서 지원

### □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세부사업명	지원분야	지원대상	지원기간	연간 연구비
학제간융합	공동연구	국내기관 및 대학 소속 연구자 6인 이상으로 구성된 연구팀	5년 (3+2)	200백만원 이내/연 (간접비 별도)

### □ 2019년 지원 실적

(단위 : 개, 백만원)

TOUR	신규	과제	계속	과제	계		
사업명	과제 수	연구비	과제 수	연구비	과제 수	연구비	
학제간융합	-	-	12	3,810	12	3,810	

### □ 주요 성과

(단위 : 건)

	'16				'17				'18			
구분	SCI(E)	등재 (후보)	일반	저역서	SCI(E)	등재 (후보)	일반	저역서	SCI(E)	등재 (후보)	일반	저역서
학제간융합	13	66	27	7	13	73	8	12	13	64	106	7

## 2. 2020년도 추진계획

### 중점 추진 방향

■ 인문사회, 문화, 예술과 과학기술의 **학제적 융합연구 활성화 추진** 

### □ 지원 규모

(단위: 개, 백만원)

사업명	신규	과제	계속	과제	계		
~ ។ ដ ក	과제 수	연구비	과제 수	연구비	과제 수	연구비	
학제간융합	-	-	7	2,080	7	2,080	

※ 2019년도부터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융복합연구'로 통합·개편

#### □ 계속과제 관리

### 가 연차점검

- 연차별 연구기간 종료 2개월 전 연차보고서 제출 및 한국연구재단 검토·승인 후 사업비 교부
- o 연차보고서 제출대상 : 총 5과제
  - 새싹형 : 5과제('18년 2과제, '19년 3과제)

### 나 단계평가

- **단계평가대상** : 총 2과제('17년 선정 2과제)
- ㅇ 평가 방식 : 단계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
- ㅇ 평가내용

단계	구분	점검 내용	비고
1단계	전공평가	■ 단계 내 연구계획 대비 수행실적 및 다음 단계	전공평가단
<u> </u>	(토론+발표)	연구계획서 평가	건 6 경기단
2단계	종합점검	■1단계 평가 결과 검토 및 지원여부 최종 결정	종합평가단

○ 평가결과 및 조치사항

점수	등급	조치
70점 이상	PASS	계속지원
70점 미만	FAIL	지원중단

- 평가결과 활용 : 다음단계 계속지원 여부 및 사업비 결정
  - ※ 지원중단 결정시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연구 결과보고 및 연구결과물 제출 관련 의무 이행

### 다 결과보고서 제출 및 종료평가

ㅇ 연구과제 수행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 ㅇ 종료평가 대상 유형 : 융합연구총괄센터

- (평가시기) 연구기간 종료 6개월 후 결과보고서 평가 실시
- (평가대상) '17년 선정 1과제
- (결과보고서 제출)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온라인 제출
- (결과평가 조치) 평가결과 미흡 판정 과제는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부과

### 라 최종연구결과물 제출 및 결과평가

#### ○ 새싹형 과제

- 연구기간 종료 2년 후 결과평가 실시
  - ※ 단, 연구 종료 후 2년 이내 실적기준의 최종연구결과물을 제출하는 경우 결과평가 면제

실적 기준		실적 산정 방식
연구	지원년수 ×	■ 논문 :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학술지 또는 SCI(E),
책임자	논문 1편 이상	A&HCI·SSCI, SCOPUS 등재지는 주저자(제1저자
공동	논문 1편	또는 교신저자)시 1편
연구원	이상	■ 저서·역서 : 단독 저작 1건은 업적 3편 공동 저작 1건은 업적 2편

- ※ 연구참여자(보조원 제외) 전원이 1편 이상 저자로 참여하여야 함(연구책임자는 최소 1편 이상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표기되어야 함)
-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게재 또는 출판된 연구결과물은 실적인정 불가
- o 결과평가 시 미흡·불량 판정 과제는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부과

#### □ 추진 일정

일정	추진내용
'20. 1월	■'20년도 학제간융합연구지원사업 세부시행계획 확정·시행
'20. 6월	■계속과제('17년 선정 새싹형 2개 과제) 단계보고서 접수 및 평가실시 ■계속과제('19년 선정 새싹형 3개 과제, '18년 선정 새싹형 2개 과제) 연차보고서 제출
'20. 9월	■계속과제 연구개시(9.1개시) ■종료과제 결과보고서 접수

# ' ■로벌연구네트워크지원(GRN)사업

###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해외 우수 연구자들과의 공동연구 및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국내
 연구자의 연구 역량 제고와 세계수준의 연구 성과 창출

#### □ 지원근거 및 추진경과

- 지원근거
  - 「학술진흥법」 제8조(학술 교류와 협력활동)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 ○ 추진경과

- ('78) "대학교수해외방문지원사업" 추진
- ('08) "글로벌연구네트워크"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13)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글로벌연구네트워크" 사업 교육부 추진
- ('15) 글로벌연구네트워크지원사업 57과제, 대학연구인력국제교류 지원사업 73과제 지원
- ('16) 글로벌연구네트워크지원사업 71과제 지원 및 대학연구인력 국제교류지원사업 통합
- ('17) 글로벌연구네트워크지원사업 69과제 지원
- ('19) 글로벌연구네트워크지원사업을 신북방지역, 신남방지역 등 전략적 지역과의 학술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개편
- ('20) 글로벌연구네트워크사업을 일반공동연구사업으로 통합·개편 및 연차점검 간소화

### □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사업명	지원분야	지원대상	지원기간	연간 연구비
글로벌연구 네트워크지원	인문사회 全분야	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의 연구자	2~3년	80백만원 이내/연 (간접비 별도)

### □ 2019년 지원 실적

(단위 : 개, 백만원)

사업명	신규	과제	계속	계속과제 계		
사태경	과제 수	연구비	과제 수	연구비	과제 수	연구비
글로벌연구 네트워크지원	6	464	65	4,554	71	5,018

### □ 주요 성과

(단위 : 건)

		'1	.6			'1	.7			'1	.8	
구분	SCI(E)	등재 (후보)	일반	저역서	SCI(E)	등재 (후보)	일반	저역서	SCI(E)	등재 (후보)	일반	저역서
글로벌연구 네트워크지원	105	12	18	5	97	30	13	3	75	38	28	5

### 2. 2020년도 추진계획

### 중점 추진 방향

- 글로벌연구네트워크 사업을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으로 통합·개편
- 지식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한 연구지원 내실화
- **연차보고서 양식을 간소화**하여 연구자 행정부담 경감

### □ 지원 규모

(단위 : 개, 백만원)

사업명	신규	과제 <sup>*</sup>	계속	과제	계		
사태경	과제 수	연구비	과제 수	연구비	과제 수	연구비	
글로벌연구네트			32	1 717	22	1 717	
워크(GRN)지원	_	_	32	1,717	52	1,717	

\* 신규과제는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에서 지원

#### □ 참여제한

- ㅇ 연구진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3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1과제로 한정함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제18조
  -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 등이 학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 연구 수행 과제 수 초과 등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과제 지원중단 조치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학술지원사업 다수과제에 참여 중인 연구자 및 대학 등이 학술진흥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한 과제에 대해 사업비 지급 중지가 확정되는 경우 타 과제에 대해서도 사업비 지급 중지 및 참여제한('18년 신규 선정 과제부터 적용)

#### □ 계속과제 관리

### 가 연차점검

- 연차별 연구기간 종료 2개월 전 연차보고서 제출 및 한국연구재단 검토·승인 후 사업비 교부
- **연차보고서 제출대상** : 총 54과제('16년 선정 28과제, '17년 선정 26과제)

#### 나 | 결과보고서 제출

○ 연구과제 수행 기가 종료 후 6개월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 다 최종연구결과물 제출 및 결과평가

- 제출대상 : 4과제('15년 선정 1과제, '16년 선정 3과제)
- **평가대상과제** : 제출 대상 4과제 중 학술활동결과물 미제출 과제

- 연구기간 종료 2년 후 결과평가 실시
  - 단, 연구 종료 후 2년 이내 실적기준의 최종연구결과물을 제출하는 경우 결과평가 면제

	구분	결과물 게재 건수
2015 선정	2~3년 지원과제	SCI급 학술지 게재 실적
2016	2년 지원과제	해외학술지 2편 이상 또는 해외학술지 1편 및 국내학술지 2편 이상
선정	3년 지원과제	해외학술지 2편 이상 또는 해외학술지 1편 및 국내학술지 3편 이상

- ※ JCR기준 IF 상위 10%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은 1.5편으로 인정
  - ※ 연구책임자는 최소 1편 이상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표기되어야 함
  -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게재 또는 출판된 학술활동 결과물은 업적으로 인정 불가
  - 해외학술지는 SSCI, A&HCI, SCOPUS급을 포함하는 해외우수학술지 게재를 원칙으로 함
  - **평가항목** : 연구결과의 질적수준/학문적 기여도/목표달성도/연구 수행 과정의 합리성 등에 대한 평가
  - **평가결과 조치** : 평가결과 '미흡', '불량' 판정 과제는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부과

#### □ 추진 일정

일정	추진내용
'20. 1월	■ '20년도 글로벌연구네트워크(GRN) 세부시행계획 수립·확정 ■ '17~'19년도 선정 글로벌연구네트워크(GRN) 계속과제(32과제) 연구 개시
'20. 2월	■'16년도 선정 종료과제 결과보고서 접수(28과제)
'20. 8월	■'16년도 선정 종료과제 최종결과물 접수(3과제)
'20. 10월	■'19년도 선정 계속과제 연차보고서 접수(5과제)
'20. 11월	■'17년도 선정 종료과제 결과보고서 접수(26과제) ■'15년도 선정 종료과제 최종결과물 접수(1과제)
'20. 12월	■'20년도 글로벌연구네트워크(GRN) 세부시행계획 수립

# Ⅱ. 연구소(집단)지원사업

- 1.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
- 2. 토대연구지원사업
- 3. 신흥지역연구지원사업
- 4. 인문한국(HK)/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
- 5.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

#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인문사회분야 연구소의 특성화·전문화를 통해 연구거점으로 육성 및 우수 학술연구 성과 창출
- 국가·사회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집단 및 차세대 연구자 육성
- 대학 내 연구소 중심의 교육과 연구연계 등 인문학 진흥전략 모색

#### □ 지원근거 및 추진경과

- 지원근거
  - 「학술진흥법」제3조(정부의 책무) 및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 추진경과
  - ('80) 대학부설연구소지원사업 시작
  - ('99) 중점연구소지원사업 신설(연간 2억 원 이내, 3단계 6년)
  - ('05)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변경(이공계 연간 5억 원, 인문사회계 연간 2.3억 원 이내, 3단계 9년)
  - ('09)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으로 명칭 변경
  - ('12)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변경(연간 2억 원 이내, 지원기간 3년)
  - ('14) 예술·체육분야 등 별도 공모 추진
  - ('15) 예술·체육분야(ASK) 지원 확대 추진
  - ('16) 지원기간 변경(2단계 6년)
  - ('19)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으로 개편(연간 2억 원 이내, 2단계 6년)

### □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사업명	지원분야	지원대상	지원기간	연간 연구비
			(신규 및 계속)	200백만원 이내/연
인문사회연구소	인문사회분야	대학부설연구소	6년(3+3년)	(간접비 별도)
지원사업	(예술체육학포함)	및 국내 연구기관	(계속)*	300백만원 이내/연
	· ·· = ·· · · -		9년(3+3+3)	(간접비 별도)

<sup>\* ~ &#</sup>x27;14년 선정 정책중점연구소

#### □ 2019년 지원 실적

(단위: 개, 백만원)

LOID	신규	과제	계속	과제	계	
사업명	과제 수	연구비	과제 수	연구비	과제 수	연구비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	74	19,439	55	14,318	129	33,757

<sup>※</sup> 계속과제: 대학중점연구소(40과제). 정책중점연구소(15과제)

#### □ 주요 성과

(단위 : 건)

		'1	.6			'1	.7			'1	.8	
구분	SCI(E)	등재 (후보)	일반	저역서	SCI(E)	등재 (후보)	일반	저역서	SCI(E)	등재 (후보)	일반	저역서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	37	494	33	75	34	303	21	38	47	355	31	36

### 2. 2020년도 추진계획

#### 중점 추진 방향

- ■지역대학 연구역량 제고 및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해 신규과제 선정 시, 지방소재 기관 할당제 적용
- 주관연구책임자도 개인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과제 수 산정 시 예외 적용** 
  - ※ 동 사업 연구책임자는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개인연구)의 연구책임자로 1과제 수행을 허용(단,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3개로 제한)
- 연구소의 **대표실적**(논문, 저서 등) **5편 이내**\*를 제출받아 **정성평가** 시행
  - \* 최근 5년간 기 지원과제의 연구성과가 있을 경우 포함하여 제출

### □ 지원 규모

(단위 : 개, 백만원)

ПОН	O청	신규	과제	계속	과제	계		
사업명	유형	과제 수	연구비	과제 수	연구비	과제 수	연구비	
	전략적지역연구형	3	780	4	1,040	7	1,820	
OLE	순수학문연구형	8	2,080	35	9,100	43	11,180	
인문 문제해결형 사회 문제해결형	문제해결형	5	1,300	15	3,900	20	5,200	
연구소	교육연계형	4	1,040	20	5,200	24	6,240	
지원 사업	대학중점(계속)	-	-	37	9,435	37	9,435	
시티	정책중점(계속)	-	-	14	3,825	14	3,825	
	합계	20	5,200	125	32,500	145	37,700	

- ※ 연구비는 간접비 포함. 신규과제 수는 변동 가능
- ※ 계속과제 예산에 DB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용역 예산 300백만원 포함

### □ 유형별 세부 내용

사업명	유형		세부 내용
	전략적지역		■신북방·신남방정책 등 국가전략적 차원의 지역학 연구 ■지역전문가 육성
	인문 순수학문 사회 연구형	논문/저역서	
		DB구축	■ 인문사회 기초학문분야 연구 및 DB화, 해외학술서 번역 ■ 창의·도전 및 소외분야 연구
연구소		번역 전집	
지원 사업	문제	일반형	■ 미래사회 예측 및 사회문제의 인문사회과학적 해결책 모색
해결형 <sup>*</sup>	심화형**	■이공분야 등 신기술·타학문과의 융·복합 연구	
	교육연계형		■대학인문사회교육, 기초교양교육, 초중등교육 관련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등

- \* 문제해결형, 교육연계형은 Top-down 방식으로 지원 가능
- \*\* '20년 종료되는 SSK 대형과제('10년 선정) 중 지원(세부내용은 세부시행계획에서 확정)

#### □ 신규과제 선정

### 가 신청자격

- 이 대학부설연구소 및 국내 연구기관
  - 대학부설연구소 : 대학 부설 인문사회분야(융복합/예술·체육학 포함) 연구소 ※ 교육연계형은 대학부설연구소만 지원가능

#### < 대학부설연구소 요건 >

- 한국연구재단 KCI 홈페이지(www.kci.go.kr)에 '대학부설연구소'로 등록된 연구소
- 대학의 학칙 등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소로서 자체 운영규정이 있는 연구소
- 연구소 명칭이나 연구자의 전공 등으로 제한하지 않으나 향후 인문사회분야 연구역량 강화 및 성장을 이루고자하는 대학부설연구소를 의미함
- 연구소는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연구소 정관에 '인문사회 분야 연구역량 강화'를 연구소 목적(목표)으로 반영하여야 함
- 국내 연구기관 : 「학술진흥법」제2조 제3호 및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 ※ 국내연구기관은 선임(연구원)급 이상이 연구책임자로 참여하여야 함

#### < 국내연구기관 요건 >

■ 한국연구재단 KCI 홈페이지(www.kci.go.kr)에 등록된 연구기관 중 아래 학술 진흥법 제2조 3호 및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 ※『학술진흥법』제2조 제3호

- 3.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국공립 연구기관
  -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라. 그 밖에 연구 인력·시설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학술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2조(연구기관의 기준) 「학술진흥법」 제2조제3호 라목의 "연구 인력·시설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란 해당 연구분야에서 3년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국내외 연구기관을 말한다.

#### ○ 연구자(연구책임자 및 일반 공동연구원) 자격요건

- 「학술진흥법」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연구자"로 최근 5년간 연구업적이 3편 이상(이공분야 연구자는 5편 이상) 있는 대학·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자

#### < 연구업적 산정 방식 >

■ 논문 :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학술지 또는 SCI(E), A&HCI·SSCI, SCOPUS 등재지에 게재된 논문은 업적 1편(공동저자로 참여한 논문도 포함)

■ 저서·역서 : 단독 저작 1건은 업적 3편, 공동 저작 1건은 업적 2편

■특허 : 특허 1건은 업적 1편

※ 전임연구인력은 연구업적 산정 요건 대상에서 제외함

#### 나 시 신청 및 참여제한

#### ㅇ 연구소

- **집단연구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소**는 **신청 불가**(단, 아래 해당사업 연구종료일이 '20. 12. 31. 이전인 경우 신청 가능)
  - ※ 연구 수행기간 중 과제 수행 연구소 변경 불가
  - \* 인문사회연구소, 인문한국(HK), 인문한국플러스(HK+), 신흥지역연구, 토대연구, 대학(정책)중점연구. 사회과학연구지원(SSK)
- 향후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정부 재정지원 제한 조치 대학의 경우 사업 참여제한 조치 적용 가능

#### ㅇ 연구진

- 동 사업\* 내에서는 1인이 1과제에 한해 신청 및 참여할 수 있음
  - \*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대학(정책)중점연구소지원사업, 토대연구, 신흥지역연구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3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1과제로 한정함 ※ 단,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연구책임자는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개인연구)의
  - · 단, 인문사회연구소시원사업 연구책임사는 인문사회문야 약물시원사업(개인연구) 연구책임자로 1과제 동시 수행 허용
- 과제신청이 완료된 이후라도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등이 학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 연구수행 과제 수 초과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최종선정 제외 및 선정이후에도 과제 지원중단 조치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정부, 대학, 민간기업 등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는 자가 동 사업에 선정되어 인건비를 받을 경우, 연구 개시일로부터 동 사업에서만 인건비를 받아야 함(인건비 중복 수혜 불가)
  - ※ 단,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에서 지급하는 인건비와 고등교육법에 따른 강사로 임용되어 받는 강사료는 중복 수혜 가능
- 기 수행중인 과제에서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신규 선정과제와 중복되는 기간의 인건비 지급을 중지하고 동 사업의 사업비에서 지원
- 온라인 신청 마감일 현재 제재를 받고 있는 연구자는 신청불가
- 학술연구지원사업 다수과제에 참여 중인 연구자 및 대학 등이 학술 진흥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한 과제에 대해 사업비 지급 중지가 확정되는 경우 타 과제에 대해서도 사업비 지급 중지 및 참여제한 ('18년 신규선정 과제부터 적용)

### 다 선정평가

○ 평가절차 및 단계

단계		평가구분	평가내용
1단계	요건심사		신청요강에 의한 신청자격 충족여부 등
그다게	전공	토론평가	연구소 육성·운영계획, 연구진 수행의지,
2단계	평가	발표평가	연구과제 및 인력양성 계획 등
3단계	종합평가		평가결과 등 종합적 검토 및 최종과제 선정

- ※ 토론평가 점수는 발표평가 대상과제 선정(선정예상 괴제수의 3배수 내외)에만 활용
- ※ 학문분야별 신청 현황에 따라 학문분야간 통합패널 구성 가능
- ※ 발표평가: 면담평가 방식으로 진행함
- **평가내용** : 연구소 운영 실적, 연구인력, 연구소발전계획, 대학의 육성 계획, 연구과제 수행계획 등
  - ※ 구체적 평가항목은 세부시행계획에서 확정
- o 과제 선정 : 평가결과 및 예산배정 기준 등을 감안하여 과제 선정

#### □ 계속과제 관리

### 가 연차점검

- **연차점검대상** : 총 104과제(인문사회연구소 74개, 대학중점 19개, 정책중점 11개)
  - ※ '19년 선정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74과제는 1단계 1차년도 연구실적에 대한 연차점검 간소화에 따라 연차보고서 제출로 대체함
  - (점검 방식) 연차보고서를 바탕으로 토론(패널)점검
  - (점검 내용)

단계	구분	점검 내용	비고
1 다. 게	연차점검	■ 연차별 연구계획 대비 수행실적 및 다음연도	연차점검단
1단계	(토론)	연구계획 점검	선사업심인
2단계	종합점검	■ 연차점검 결과 검토 및 지원여부 최종결정	종합점검단

- (점검결과 및 조치) 연차점검 결과는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되, 미흡일 경우 지원중단

결과	조치
- 우수/보통	계속지원
 미흡	지원중단

- (점검결과 활용) 다음년도 계속 지원 여부 및 사업비 결정
  - ※ 지원중단 결정시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연구 결과보고 및 연구결과물 제출 관련 의무 이행

#### 나 단계평가

- **단계평가대상** : 총 21과제(대학중점 18개, 정책중점 3개)
  - (평가 방식) 단계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
  - (평가 내용)

단계	구분	점검 내용	비고
1 다.게	전공평가	■단계 내 연구계획 대비 수행실적 및 다음 단계	전공
1단계	(토론+발표)	연구계획서 평가 ※ 필요 시, 현장실사 실시	평가단
2단계	종합점검	■1단계 평가 결과 검토 및 지원여부 최종 결정	종합 평가단

- (평가결과 및 조치)

다

점수	등급
70점 이상	PASS
70점 미만	FAIL

- ※ 단계평가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탈락할 수 있음
- (평가결과 활용) 다음년도 계속 지원 여부 및 사업비 결정
  - ※ 지원중단 결정시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연구 결과보고 및 연구결과물 제출 관련 의무 이행

### 최종연구결과물 제출 및 결과평가

- 연구기간 종료 2년 후 결과평가 실시
  - 단, 연구 종료 후 2년 이내 실적기준의 최종연구결과물을 제출하는 경우 결과평가 면제

실적 기준	실적 산정 방식
지원 년수	■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학술지 또는 SCI(E), A&HCI·
× 연구소별	SSCI, SCOPUS 등재지는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시 1편
논문 2편 이상	■ 저서·역서: 단독 저작 1건은 업적 3편 공동 저작 1건은 업적 2편

- ※ 해당과제에 해당기간 동안 참여한 연구원(연구책임자, 일반공동연구원, 전임연구인력) 전원이 1편 이상 저자로 참여하여야 함(연구책임자는 최소 1편 이상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표기되어야 함)
-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게재 또는 출판된 연구결과물은 실적인정 불가
- ※ 결과평가 실시일 및 실적 기준은 세부유형별로 일부 상이할 수 있음(구체적인 사항은 세부시행계획에서 확정)
- 결과평가 시 미흡·불량 판정 과제는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부과

### □ 추진 일정

일정	추진내용
'20. 4월	■'20년도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세부시행계획 확정·시행 ■신규과제 신청 공고
'20. 5월	■신규과제 신청 접수
'20. 6월	■계속과제 연차보고서 및 단계보고서 접수
'20. 7~8월	■신규과제 선정평가 실시 ■계속과제 연차점검 및 단계평가 실시 ■계속과제(정책중점) 연차보고서 및 단계보고서 접수
'20. 9월	■신규 및 계속과제 연구개시 ■계속과제(정책중점) 연차점검 및 단계평가 실시
'20. 10월	■ 계속과제(정책중점) 연구개시

# 2 토대연구지원사업

###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인문사회분야의 토대연구지원을 통해 **지식생산의 원천 제공** 및 **독창적 연구이론 발전**을 위한 **기틀 마련**
- 사전편찬, 기초연구DB 구축, 희귀언어 연구자료 축적 등의 연구
   인프라 구축 과제를 Top-Down 방식으로 지원

#### □ 지원근거 및 추진경과

- 지원근거
  - 「학술진흥법」제3조(정부의 책무) 및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 추진경과
  - ('10) 일반기초연구지원사업에서 토대기초연구지원사업 분리
  - ('11) 토대기초연구지원사업 인문사회분야와 한국학 분야로 분리
  - ('12) 토대연구지원사업으로 명칭 변경
  - ('13) 토대연구DB 현장 기술 컨설팅 개시
  - ('15) 토대연구결과물 DB 구축 개시
  - ('16) 토대연구결과물 DB 국회도서관과 연계 개시
  - ('17) 토대연구결과물 DB 대학도서관과 연계 개시
  - ('19)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으로 통합
    - ※ 계속과제에 한해 지원하며, 신규과제는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에서 지원
    - \* 토대연구, 신흥지역연구, 대학중점연구소지원시업을 인문시회연구소지원시업으로 통합 개편

### □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사업명	지원분야	지원대상	지원기간	연간 연구비
토대연구지원	인문사회 全분야	   대학부설연구소 <sup>**</sup>		200백만원
	(예술·체육학 포함,	및 국내 연구기관	3/5(3+2)년	이내/년
	한국학 분야 제외 <sup>*</sup> )			(간접비 별도)

- \* '10년도 사업개편에 따라 한국학 분야(한국학중앙연구원) 분리 시행
- \*\* 대학부설연구소의 경우 연구소장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여야 함

#### □ 2019년 지원 실적

(단위: 개, 백만원)

TOUR	신규	과제	계속	과제	계		
사업명	과제 수	연구비	과제 수	연구비	과제 수	연구비	
토대연구지원	-	-	39	9,750	39	9,750	

※ 한국학분야토대연구지원사업 제외(21과제 5.000백만원)

#### □ 주요 성과

(단위 : 건)

	'16				'17				'18			
구분	SCI(E)	등재 (후보)	일반	저역서	SCI(E)	등재 (후보)	일반	저역서	SCI(E)	등재 (후보)	일반	저역서
토대연구지원	1	83	7	29	2	41	16	19	3	37	12	57

### 2. 2020년도 추진계획

### 🥛 중점 추진 방향

- 토대연구지원사업 시스템에 최적화된 연구결과물(DB) 관리 환경을 구축하고, 대학도서관·공공기관도서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이용자 서비스 제공
- 연구자 및 일반의 토대연구지원사업 **DB 접근성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토대연구 DB 검색 기능 확대**

#### □ 지원 규모

(단위: 개, 백만원)

사업명	신규	과제	계속	과제	계		
7133	과제 수	연구비	과제 수	연구비	과제 수	연구비	
토대연구지원	-	-	23	5,865	23	5,865	

<sup>※</sup> 신규과제는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에서 지원, 한국학분야 토대연구지원 과제 제외 (계속 8과제 / 1,911백만원)

#### □ 참여제한

- ㅇ 연구진
  - 본 사업 내에서는 1인이 1과제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음
  - '20년도 상반기 선정 학술지원사업 내에서는 연구책임자로 1과제만 참여 가능
  - 참여일 기준 현재 제재를 받고 있는 연구자는 참여 불가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3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1과제로 한정함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제18조
  - 정부, 대학, 민간기업 등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는 자가 동 사업에 선정되어 인건비를 받을 경우, 연구 개시일로부터 동 사업에서만 인건비를 받아야 함(인건비 중복 수혜 불가)
    - ※ 단,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에서 지급하는 인건비와 고등교육법에 따른 강사로 임용되어 받는 강사료는 중복 수혜 가능
  - 학술연구지원사업 다수과제에 참여 중인 연구자 및 대학 등이 학술 진흥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한 과제에 대해 사업비 지급 중지가 확정되는 경우 타 과제에 대해서도 사업비 지급 중지 및 참여제한 ('18년 신규선정 과제부터 적용)

#### □ 계속과제 관리

### 가 연차점검

○ **연차점검 대상** : 총 8과제('16년 선정 3개, '18년 선정 5개)

o 점검방식: 연차보고서를 바탕으로 토론(패널)점검

○ 점검내용

단계	구분	점검 내용	비고
1단계	연차점검 (토론)	■ 연차별 연구계획 대비 수행실적 및 다음년도 연구계획 점검	연차점검단
2단계	종합점검	■ 연차점검 결과 검토 및 지원여부 최종결정	종합점검단

#### ○ (점검결과 및 조치)

- 연차점검 결과는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되, 미흡일 경우 지원중단

결과	조치
우수/보통	계속지원
미흡	지원중단

○ (점검결과 활용) 다음년도 지원여부 및 사업비 결정

※ 지원중단 결정시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연구 결과보고 및 연구결과물 제출 관련 의무 이행

#### 나 단계평가

- **단계평가 대상** : 15과제(′17년 선정)
- o (평가시기) 단계보고서 접수 후 다음 단계 연구개시 전

#### ○ (평가방법)

구분	평가구분	평가내용	비고
1단계	현장실사	사업비 집행에 대한 적절성 및 연구 협약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정량자료 조사 병행 가능)	현장평가단
2단계	전공 <u>토론평가</u> 평가 <u>발표평</u> 가	3차년도까지의 연구추진 실적 및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한 종합적 평가	전공평가단
 3단계	종합평가	1단계 및 2단계 결과를 토대로 종합 심의 후 다음 단계지원여부 최종 결정	종합평가단

#### ○ (평가 결과 및 조치)

점수	등급	조치
70점 이상	PASS	계속지원
 70점 미만	FAIL	지원중단

- ※ 단계평가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탈락할 수 있음
- o (평가결과 활용) 다음 단계 지원여부 및 사업비 결정
  - 지원중단 결정 시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학술활동 결과보고 및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관련 의무 이행

### 다 결과보고서 제출 및 종료평가

○ 평가시기 : 연구기간 종료 6개월 후 결과평가 실시

○ 결과평가 대상 : 4과제('14년 선정 1개, '16년 선정 3개)

ㅇ 평가결과 활용 : 미흡 판정 과제는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부과

#### □ 추진 일정

일정	추진내용
'20. 1월	■ '20년도 토대연구지원사업 세부시행계획 확정·시행
'20. 2월	■종료과제('16년 선정) 결과보고서 접수
'20. 3~4월	■종료과제('16년 선정) 결과평가 실시
	■계속과제('18년 선정) 연차보고서 접수
	■종료과제('16년 선정) 결과평가 실시
'20 E 6일	■계속과제('18년 선정) 연차점검 실시
'20. 5~6월	■계속과제 연차('16년 선정) 및 단계('17년 선정)보고서 접수
	■종료과제('14년 선정, '16년 선정) 결과보고서 접수
	■계속과제('18년 선정) 연구개시
'20. 7월	■계속과제 연차점검('16년 선정) 및 단계평가('17년 선정) 실시
	■종료과제('14년 선정, '16년 선정) 결과평가 실시
'20. 8월	■계속과제 연차점검('16년 선정) 및 단계평가('17년 선정) 실시
20. 0결	■종료과제('14년 선정, '16년 선정) 결과평가 실시
'20. 9월	■계속과제('16, '17년 선정) 연구개시

# 3 Ⅰ 신흥지역연구지원사업

###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신흥지역에 대한 장기적·안정적 연구기반 마련을 통해 **지역전문가 양성**
- o 정부, 기업 등의 **다양한 신흥시장 진출 전략** 지원
- 실용적 연구를 강화하여 성공적인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차별화된 전략 및 현안 대응에 필요한 심층 정보 생산・공유

#### □ 지원근거 및 추진경과

- 지워근거
  - 「학술진흥법」제3조(정부의 책무) 및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 추진경과
  - ('12) 신규 사업 신설 및 6개 신규과제 선정, 지원
  - ('13) 1개 신규과제(아프리카) 선정 및 총 7개 과제 지원
  - ('15) 1개 계속과제 연차점검 탈락(북벵골만)으로 총 6개 과제 지원
  - ('16) 1개 신규과제(미얀마) 선정 및 총 7개 과제 지원
  - ('17) 5개 신규과제(유럽, 아시아, 중동, 중남미) 선정 및 총 7개 과제 지원
  - ('18) '16, '17년 선정 계속과제 총 6개 과제 지원
  - ('19)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으로 통합
    - \* 토대연구, 신흥지역연구,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을 인문사회연구소지원 사업으로 통합 개편
    - ※ 계속과제에 한해 지원하며, 신규과제는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에서 지원

### □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사업명	지원분야	지원대상	지원기간	연간 연구비
시하기에에기기이	인문사회분야	디카디 서 어 그 ㅅ*	5년	230백만원 이내/연
신흥지역연구지원		대학부설연구소*	(2+3)	(간접비 별도)

<sup>\*</sup> 대학의 학칙 등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소로서 자체 운영규정이 있는 대학부설연구소

#### □ 2019년 지원 실적

(단위 : 개, 백만원)

LOID	신규과제		계속	과제	계	
사업명	과제 수	연구비	과제 수	연구비	과제 수	연구비
신흥지역연구지원	-	-	6	1,716	6	1,716

#### □ 주요 성과

(단위 : 건)

	'16			'17			'18					
구분	SCI(E)	등재 (후보)	일반	저역서	SCI(E)	등재 (후보)	일반	저역서	SCI(E)	등재 (후보)	일반	저역서
신흥지역연구	-	29	2	16	4	13	5	22	1	16	5	9

### 2. 2020년도 추진계획

#### 중점 추진 방향

- 신흥지역 연구지원사업의 **확대 발전**을 위한 사업 **내실화**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신흥지역 정보제공 및 지역 전문가 양성 강화
- 실용적인 연구 중심의 **지역연구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정부, 기업 등의 **다양한 신흥시장 진출 전략 지원**
- 연구소의 **대표실적**(논문, 저서 등) **5편 이내**를 제출받아 **정성평가** 시행 ※ 최근 5년간 기 지원과제의 연구성과가 있을 경우 포함하여 제출

### □ 지원 규모

(단위 : 개, 백만원)

TIOLES	신규	<b>신규과제</b> 계속과제 계				
사업명	과제 수	연구비	과제 수	연구비	과제 수	연구비
신흥지역연구지원	-	-	6	1,716	6	1,716

※ 신규과제는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에서 지원

### □ 계속과제 관리

### 가 연차점검

- (점검 대상) 6개 과제('16년 선정, '17년 선정)
- (점검 방식) 연차보고서를 바탕으로 토론(패널)점검
- (점검 내용)

단계	구분	점검 내용	비고
1 다.게	연차점검	■ 연차별 연구계획 대비 수행실적 및 다음	연차점검단
1단계	(토론)	년도 연구계획 점검	선사삼삼년
2단계	종합점검	■ 연차점검 결과 검토 및 지원여부 최종결정	종합점검단

○ (점검결과 및 조치) 연차점검 결과는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되, 미흡일 경우 지원중단

결과	조치
우수/보통	계속지원
미흡	지원중단

- (점검결과 활용) 다음년도 계속 지원 여부 및 사업비 결정
  - ※ 지원중단 결정시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연구 결과보고 및 연구결과물 제출 관련 의무 이행

### 나 단계평가

○ **(평가 대상)** 없음

### 최종연구결과물 제출 및 결과평가

- 연구기간 종료 2년 후 결과평가 실시
  - 단, 연구 종료 후 2년 이내 실적기준의 최종연구결과물을 제출하는 경우 결과평가 면제

실적 기준	실적 산정 방식
연구소당	■ 논문 :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학술지 또는 SCI(E), A&HCI·
연간 1편	SSCI, SCOPUS 등재지는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시 1편
이상	■ 저서·역서 : 단독 저작 1건은 업적 3편, 공동 저작 1건은 업적 2편

- ※ 연구참여자(보조원 제외) 전원이 1편 이상 저자로 참여하여야 함 (연구 책임자는 최소 1편 이상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표기되어야 함)
-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게재 또는 출판된 연구결과물은 실적인정 불가
- 결과평가 시 미흡·불량 판정 과제는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부과

#### □ 추진 일정

다

일정	추진내용
'20. 4월	■'20년도 신흥지역연구지원사업 세부시행계획 확정·시행
'20. 6월	■계속과제 연차보고서 접수
'20. 7~8월	■계속과제 연차점검 실시
'20. 9월	■계속과제 연구개시

# 인문한국(HK)/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

###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대학 내 인문학 연구소 집중 육성을 통한 **인문학 연구 인프라 구축** 및 세계적 수준의 인문학 연구 성과 창출
- 인문학 연구의 다양화 및 대중화를 통해 연구 성과의 **학문적・** 사회적 확산 도모

#### □ 지원근거 및 추진경과

- 지원근거
  - 「학술진흥법」제3조(정부의 책무) 및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 추진경과
  - ('06) 전국 인문대학 학장의 **'인문학 위기선언'** 등 인문학의 사회적 소통 강화 요구를 반영한 사업추진 필요성 제기
  - ('07) 인문학진흥사업 신규 추진
  - ('10) 인문한국지원사업 2단계 연구개시
  - ('13) 인문한국지원사업 3단계 연구개시
  - ('16) 연구 인프라 활용 및 아젠다 연구 중심의 차기 인문한국지원사업 기획 추진
  - ('17) 인문한국지원사업 최초 연구기간 종료연구소 총괄평가 추진
  - ('17)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신규 추진
  - ('18)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 2유형(재진입) 신규 추진

### □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 ○ 인문한국(HK)지원사업

사업명	지원분야		지원대상	지원기간	연간 연구비		
	인문 해외 지역	대형		10년 (3+3+4년)	1,000~1,500백만원/연 (간접비 별도)		
인문한국		중형	대학부설 연구소		500~800백만원/연 (간접비 별도)		
(HK)지원		중형			500~800백만원/연 (간접비 별도)		
		소형			300백만원 이내/연 (간접비 별도)		

### ○ 인문한국플러스(HK<sup>+</sup>) 지원사업

사업명		지원분야	지원대상	지원기간	연간 연구비		
	1유형	인문기초학문					
인문한국		해외지역			1,200백만원 이내/연 (간접비 포함)		
플러스 플러스		소외·보호/창의·도전	대학부설	7년			
		국가전략·융복합	연구소	(3+4년)			
(HK⁺)지원	2유형	인문기초학문			300백만원 내외/연		
		해외지역			(간접비 포함)		

### ㅇ 성과확산총괄센터

사업명	사업유형	지원대상	선정방식	지원기간	연간 연구비
인문한국(HK)/인문	성과확산	인문한국	TI저	2년	100백만원/연
한국플러스(HK⁺)지원	총괄센터	협의회	지정	<sup>2</sup> 딘	(간접비 별도)

<sup>※</sup> HK/HK⁺ 연구 성과의 사회적 확산 및 공유

### □ 2019년 지원 실적

(단위 : 개, 백만원)

TOUGH	신규	과제	계속	과제	계		
사업명	과제 수	연구비	과제 수	연구비	과제 수	연구비	
인문한국(HK)	-	_	10	6,606	10	6,606	
인문한국플러스(HK*)	11	7,673	23	19,275	34	26,948	
성과확산총괄센터	1	130	-	_	1	130	
합계	12	7,803	33	25,881	45	33,684	

#### □ 주요 성과

	'16				'17				'18			
구분	SCI(E)	등재 (후보)	일반	저역서	SCI(E)	등재 (후보)	일반	저역서	SCI(E)	등재 (후보)	일반	저역서
인문한국 (HK)	9	266	68	76	13	297	21	103	21	357	68	109

### 2. 2020년도 추진계획

#### 중점 추진 방향

- 기 구축된 연구 인프라 활용 극대화를 위해 종료연구소('19,'20년 종료) 중 우수한 연구소를 선정하여 지원(HK<sup>+</sup>사업 2유형)
  - ※ HK교수 인건비는 미지원하며, 3억원 내외(간접비 포함)로 지원
- 선정 및 중간평가(연차・단계) 시 HK교수(정년트랙) 임용 등 **협약사항** 이행여부를 평가하고, 협약위반 및 사업성과가 계획에 비해 현저히 저조할 시 차년도 사업비 연계, 협약해지, 사업비 회수 등 제재조치
  - ※ 패널티 원인에 따라 사업비 삭감 대상 분리(연구소 운영에 관한 대학 지원 미비-간접비 삭감. 연구 성과 미흡-연구비 삭감)
  - ※ 확약사항 미이행, 연구성과 미흡 등 중간평가 결과를 근거로 행정조치 (주의 또는 경고), 중대한 협약 위반의 경우 지원 중단 및 사업비 환수 가능
- 지자체, 지역대학 및 시민단체 등과 연계강화를 통해 지역 **인문자산** 발굴 및 지역주민 대상 인문학 대중화 프로그램 활성화
  - ※ 초・중등 인문교육, 평생교육 및 소외계층 대상 인문교육, 지역인문학 프로그램 개발 등
- 연차점검 및 단계평가에서 **연구활동 영역과 대학의 제도적,** 행·재정적 지원 영역의 평가주관 분리
  - ※ 연구 활동 영역 : 동료평가 / 대학 지원 영역 : 재단 주관(법학·행정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 활용, 인문한국관리위원회 최종 검토)
- 연차점검 시 연구소의 대표실적(논문, 저서 등) 5편 이내를 제출 받아 정성평가 실시(단, 1차년도는 제외)

#### □ 지원 규모

(단위: 개, 백만원)

사업명	신규	과제	계속	과제	계		
사립경	과제 수	연구비	과제 수	연구비	과제 수	연구비	
인문한국(HK)	=	1	4	2,005	4	2,005	
인문한국플러스(HK*)	7	5,792	34	27,006	41	32,798	
성과확산총괄센터	=	1	1	130	1	130	
합계	7	5,792	39	29,141	46	34,933	

#### □ 신규과제 선정

### 가 신청자격

#### 1 주관기관 신청자격

- 주관기관 자격 : 전국 4년제 일반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학) 부설 인문학 연구소
  - 아젠다와 관련된 3년 이내의 연구소 단위 연구 실적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증빙 제출)
    - ※ 연구소 명의의 총서나 학회지. 학술대회 개최 등
  - 대학은 세부사업 유형별(4개)로 각 1개 연구소만 신청 가능
    - ※ 본/분교 구분 5개 대학(건국대, 고려대, 동국대, 연세대, 한양대)은 본교와 분교를 별도 대학으로 인정

#### 신 청 제 한

- ◇ '07년부터 **인문한국(HK)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수행한 연구소 (하위단위 연구소 포함)는 1유형에 신청 불가
  - 기존 HK사업 참여 연구소의 연구인력, 시설·자산 등을 이관하여 신규 연구소를 신설하거나 기존 다른 연구소에 병합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 최근 5년이내(15.1.~'20.2.)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사업비 횡령·유용 관련한 다음의 대학 부설연구소는 신청 불가
  - 행정적 처분(협약해지, 사업비 환수)을 받은 대학 부설연구소
  - 형사처벌 및 참여제한처분을 받은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 부설연구소
- ◇ '07년부터 HK사업을 지원받으면서 HK교수의 정년트랙 임용 필수 조건을 미이행한 대학에 소속된 모든 부설 연구소는 '17년 이후 HK+ 사업에 신청 불가

#### ② 연구자 신청자격

- 「학술진흥법」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은 연구 실적이 있는 연구자에 한함
- ◇ 최근 5년간(2015.1.1.부터 온라인신청 마감일 현재까지) 국내외 전문학술지\*, 등록 완료된 국제특허 또는 전문학술저서(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 등의 연구 실적이 3편 이상(이공분야 연구자는 5편 이상)인 자
  -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SCI(E), A&HCI·SSCI, SCOPUS 학술지
  - 단독저서 및 역서는 실적 3편, 공동저서 및 역서는 실적 2편으로 산정
  - 특허 1건은 연구실적 1편으로 산정
  - 상기 학술지에 게재하기 어려운 특수한 분야는 평가 시 참고할 만한 소명서를 온라인 신청 시 입력
  - HK연구교수는 업적 요건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나 신청 및 참여제한

#### ○ 연구소

- 인문사회연구소, 토대연구 및 신흥지역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소는 본 사업을 신청할 수 없음
  - ※ 위의 해당사업 연구종료일이 2020.12.31. 이전인 경우는 신청가능
- 향후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등에 따른 정부 재정지원 제한 조치 대학의 경우 사업 참여제한 조치 적용 가능

### ○ 연구진

- 본 사업 내에서는 1인이 1과제에 한하여 신청 및 참여할 수 있음
- '20년도 상반기 선정 학술지원사업 내에서는 연구책임자로 1과제만 신청 가능
  - ※ 2유형은 '20년 하반기 선정 학술지원사업 내 적용
- 온라인 신청 마감일 현재 제재를 받고 있는 연구자는 신청 불가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3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1과제로 한정함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제18조

- 연구과제 신청이 완료된 이후라도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공동 연구원 등이 학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 연구 수행 과제 수 초과 등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최종 선정에서 제외되며, 선정 이후에도 과제 지원중단 조치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학술연구지원사업 다수과제에 참여 중인 연구자 및 대학 등이 학술 진흥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한 과제에 대해 사업비 지급 중지가 확정되는 경우 타 과제에 대해서도 사업비 지급 중지 및 참여제한 ('18년 신규선정 과제부터 적용)
- 정부, 대학, 민간기업 등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는 자가 본 사업에 선정되어 인건비를 받는 경우, 연구개시일부터 본 사업에서만 인건비를 받아야 함(인건비 중복 수혜 불가)
  - ※ 기 수행 중인 과제에서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신규선정 과제와 중복되는 기간에 대하여는 인건비 지급을 중지하고 본 사업의 사업비에서 지원
  - ※ 전임연구인력(HK연구교수)가 별도로 받는 강사료는 인건비성 경비로 간주 하지 않음

# 다 선정평가

#### ○ 평가절차 및 단계

①요건심사	②전공평가		③종합평가
신청요강의 신청자격 충족여부검토	1) 토론평가 2) 발표평가	$\Rightarrow$	평가 결과 종합검토 및 최종과제 선정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	한국연구재단

- ※ 토론평가 점수는 발표평가 대상과제 선정에만 활용
- **평가내용** : 아젠다 연구 수행, 연구기반 구축 등
  - ※ 구체적 평가항목은 세부시행계획에서 확정
  - ※ 2유형은 선정평가 시 연구소의 대표실적(논문, 저서 등) 5편 이내를 제출 받아 정성평가 실시

#### □ 계속과제 관리

### 가 연차점검

○ **연차점검 대상** : '11, '12, '18, '19년 선정 29개 연구소

○ **점검방식** : 연차보고서를 바탕으로 토론(패널)점검(패널합의점검)

○ 점검내용

단계	구분	점검 내용	비고
1단계	연차점검 (토론)	■ 연차별 연구계획 대비 수행실적 및 다음년도 연구계획 점검	연차점검단
2단계	종합점검	■ 연차점검 결과 검토 및 지원여부 최종결정	종합점검단

#### ○ 점검결과 및 조치

- 연차점검 결과는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되, 미흡일 경우 정밀평가 실시

결과	조치
우수/보통	계속지원
미흡	정밀평가

- 정밀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점수	등급	조치
70점 이상	PASS	계속지원
70점 미만	FAIL	지원중단

### ○ 점검결과 활용

- 다음년도 지원여부 및 사업비를 결정하되 선정 당시 주요 요건 미이행 연구소는 행정조치(주의 또는 경고, 협약해지, 사업비 회수 등)
  - ※ 지원중단 결정시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연구 결과보고 의무 이행

## 나 단계평가

○ **평가대상** : '17년 선정 9개 연구소

○ **평가방식** : 단계보고서를 바탕으로 토론(패널)평가(패널합의평가)

○ 평가내용

단계	구분	점검 내용	비고
1단계	전공평가 (토론+발표)	■ 단계 내 연구계획 대비 수행실적 및 다음 단계 연구계획 점검 ※ 현장실사 결과 반영	전공평가단
2단계	종합평가	■ 단계평가 결과 검토 및 지원여부 최종결정	종합평가단

#### ○ 평가결과 및 조치

점수	등급	조치
70% 이상	PASS	계속지원
70% 미만	FAIL	지원중단

#### ○ 평가결과 활용

- 다음단계 지원여부 및 사업비를 결정하되 선정 당시 주요 요건 미이행 연구소는 행정조치(주의 또는 경고, 협약해지, 사업비 회수 등)
  - ※ 단계평가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탈락할 수 있음
  - ※ 지원중단 결정시「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연구결과 보고 의무 이행

## 다 총괄보고서 제출 및 총괄평가

○ **평가대상** : '10년 선정 6개 연구소

○ **평가방식** : 총괄보고서를 바탕으로 토론(패널)평가(패널합의평가)

단계	구분	점검 내용	비고
1단계	전공평가 (토론+발표)	<ul> <li>규정 및 협약사항 이행 평가</li> <li>연구성과 평가</li> <li>연구소 자립화 기반 및 인프라구축 등 평가</li> <li>※ 필요 시 현장실사</li> </ul>	전공평가단
2단계	종합평가	■ 전공평가 결과 검토 및 최종 심의	종합평가단

#### ○ 평가결과 및 조치

- 총괄평가는 점검 영역(항목)별로 각각 5개 등급(매우우수/우수/보통/ 미흡/매우미흡) 중 하나를 부여한 후, 각 등급을 최종점수로 환산
- 점검 영역의 모든 환산점수를 합산·평균한 후, 기준표에 따라 해당 등급으로 전환함

종합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최종점수	95점 이상	95점 미만~ 85점 이상	85점 미만~ 70점 이상	70점 미만

- **평가결과 활용** : 사업 종료 시까지 중대한 확약사항 미이행의 경우 제재조치 등 검토
  - (성과확산) 연구소간 성과공유 및 신규 연구소에 우수 사례 제시
  - (후속사업 반영) HK<sup>+</sup> 2유형 신규 선정평가 시 HK사업 **종료 연구소**에 대한 **총괄평가 결과를 연계・반영**
  - (정년트랙 임용 의무 위반) HK교수 정년트랙 임용 의무 등 협약 사항 위반 시 제재 조치(협약해지 및 사업비회수, 참여제한 등)

#### □ 추진 일정

일정	추진내용
/20 19	■ 인문한국 및 인문한국플러스 지원사업 세부시행계획 확정·시행
'20. 1월	■신규과제 신청 공고(1유형)
	■ 신규과제(HK <sup>+</sup> 1유형) 신청 접수
'20. 2월	■계속과제('18년 선정(2유형)) 연차점검 실시
	■ 계속과제('18, '19년 선정(1유형)) 연차보고서 접수
	■ 계속과제('18년 선정(2유형)) 연구개시
'20. 3~4월	■ 계속과제('18, '19년 선정(1유형)) 연차점검 실시
	■ 신규과제(HK <sup>+</sup> 1유형) 선정평가
/20 [8]	■ 신규과제(HK <sup>+</sup> 1유형) 및 계속과제('18, '19년 선정(1유형)) 연구개시
'20. 5월	■'17년 선정 HK <sup>+</sup> 1유형 단계보고서 접수
	■ 신규과제 신청 공고(2유형)
/20 6.91	■ 종료과제('10년 선정) 총괄보고서 접수
'20. 6월	■ 계속과제('11, '12, '18, '19년 선정 HK 및 HK <sup>+</sup> 2유형) 연차보고서 접수
	■'17년 선정 HK <sup>+</sup> 1유형 단계평가 실시
	■ 계속과제('11, '12, '18, '19년 선정 HK 및 HK <sup>+</sup> 2유형) 연차점검 실시
	■ 종료과제('10년 선정) 총괄평가 실시
'20. 7~8월	■신규과제(HK <sup>+</sup> 2유형) 신청 및 선정평가
	■성과확산총괄센터 활동보고서 및 차년도 업무계획서 접수
	■'17년 선정 HK <sup>+</sup> 1유형 단계평가 실시
/20 0 100	■ 계속과제(HK, HK <sup>+</sup> ) 연구개시
'20. 9~10월	■ 성과확산총괄센터 업무개시
'20. 12월	■ 계속과제('18년 선정(2유형)) 연차보고서 접수

# 사회과학연구[SSK]지원사업

###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한국 사회과학 연구의 학문 자생력 강화 및 차세대 사회과학자 양성을 통한 '우수 연구집단(Think Tank)' 육성
- 국가·사회 변화에 따른 연구수요 반영을 통해 미래사회 예측 및 사회 문제 해결 등 사회과학 연구의 적실성 제고
- 사회과학분야 연구 동향정보 제공 및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 □ 지원근거 및 추진경과

- 지원근거
  - 「학술진흥법」제3조(정부의 책무) 및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 추진경과
  - ('10) 한국사회기반연구지원사업(SSK) 신설
  - ('11)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에서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으로 분리 개편
  - ('13) "SSK-정부정책연계지원사업" 신설
  - ('14) 중형연구단 신규 5과제 최초 선정
  - ('16) 대형연구센터 17과제 최초 선정
  - ('17) 대형연구센터 14과제 선정, 소형연구팀 신규 13과제 선정
  - ('18) 대형연구센터 8과제 선정, 소형연구팀 신규 6과제 선정
  - ('19) 대형연구센터 4과제 선정(대형연구센터 총 40과제 지원)

## □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 ○ 신규과제

	사업명	지원분야	지원대상	지원기간	연간 연구비
우수 연구	단계 지속형 (소형+소형+소형)			10년 (3+3+4)	۸ <del>۱</del> ۵ ۱ ۱ ۱ ۱ ۱ ۱ ۱ ۱ ۱ ۱ ۱ ۱ ۱ ۱ ۱ ۱ ۱ ۱
급 T 집단 육성	단계 발전형 (소형+중형+중형)	사회과학 全 분야*	대학 전임교원 및 박사후 연구자**	10년 (3+3+4)	- 소형: 1억원 이내 (간접비 별도) 중형: 23억원 이내 (간접비 별도)
	남기 데이터연구 ≥형+중형+중형)			10년 (3+3+4)	

- \* 인문-사회과학 융합 분야 포함
- \*\* 단,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대학의 사회과학분야 전임교원이어야 함

#### ○ 계속과제

사임	<b>설명</b>	지원분야	지원대상	지원기간	연간 연구비
	소형 연구팀	- 사회과학 全 분야*			1억원 이내 (간접비 별도)
우수연구 집단육성	중형 연구단		대학 전임교원 및 박사후 연구자**	10년*** (3+3+4)	2.3억원 이내 (간접비 별도)
	대형 연구센터				4.5억원 이내 (간접비 별도)
연구집단지원 (SSK-Networking 및 성과·홍보확산 사업단)			사회과학분야 연구자	3년	3억원 (간접비 포함)

- \* 인문-사회과학 융합 분야 포함
- \*\* 단,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대학의 사회과학분야 전임교원이어야 함
- \*\*\* '17년 및 '18년 소형 선정된 계속과제는 '21년 이후 각각 해당 단계 종료 시 단계 지속형 또는 단계발전형으로 전환 유도

### □ 2019년 지원 실적

(단위: 개, 백만원)

I LOI DI	신규과제		계속과제		계	
사업명	과제 수	연구비	과제 수	연구비	과제 수	연구비
우수연구집단육성	-	-	57	25,815	57	25,815
연구집단지원	1	270	-	-	1	270
합계	1	270	57	25,815	58	26,085

#### □ 주요 성과

(단위 : 건)

구분		'1	.6			'1	.7		'18			
	SCI(E)	등재 (후보)	일반	저역서	SCI(E)	등재 (후보)	일반	저역서	SCI(E)	등재 (후보)	일반	저역서
사회과학연구	227	1,055	114	154	231	814	95	152	129	740	52	93

### 2. 2020년도 추진계획

### 중점 추진 방향

- (소형신규과제) 소·중형 중심의 유연한 지원체계 개편으로 단순 성장단계 요구에 따른 물리적 연합 및 형식적 대형연구 지양
- (소형신규과제) 선정평가 시 일정비율의 **지방할당제** 실시, **단계별 강제 탈락제도를 폐지**하되 엄격한 연차 및 단계평가 운영
- 사회과학분야 양질의 장기 데이터 연구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의 시범사업화 추진
- (대형종료과제) 기존의 연구성과를 심화시킨 세부 주제로 SSK 소형 신규 또는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문제해결형(자유주제) 별도 트랙으로 지원

### □ 지원 규모

(단위: 개, 백만원)

ILOUER	신규	과제	계속	과제	계	
사업명	과제 수	연구비	과제 수	연구비	과제 수	연구비
우수연구집단육성	9	1,215	35	16,587	44	17,802
연구집단지원	-	-	1	300	1	300
장기데이터연구*	1	135	-	-	1	135
합계	10	1,350	36	16,887	46	18,237

\* 국가·사회적/학문적으로 유의미한 사회과학적 연구에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 생성을 지원하는 신규 시범사업(세부사항은 향후 세부시행계획 등에 명시). 단, 적정과제가 없을 경우 미 선정 및 우수연구집단육성 신규 예산으로 편성 가능

### □ 신규과제 선정

### 가 신청자격

○ 사회과학분야 학술연구자(구체적 자격요건은 세부시행계획에 명시)

### 나 신청 및 참여제한

- 본 사업 내에서는 1인이 1과제만 신청 및 참여할 수 있음
  - 단 연구집단지원과제 연구자는 제외함
- "하반기 선정 사업" 내에서는 연구책임자로 1과제만 신청 가능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3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1과제로 한정함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제18조
- 온라인 신청 마감일 현재 제재를 받고 있는 연구자는 신청불가

- 연구과제 신청이 완료된 이후라도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 등이 학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 연구 수행 과제 수 초과 등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최종 선정에서 제외되며, 선정 이후에도 과제 지원중단 조치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학술연구지원사업 다수과제에 참여 중인 연구자 및 대학 등이 학술 진흥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한 과제에 대해 사업비 지급 중지가 확정되는 경우 타 과제에 대해서도 사업비 지급 중지 및 참여제한 ('18년 신규선정 과제부터 적용)
- 정부, 대학, 민간기업 등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는 자가 동 사업에 선정되어 인건비를 받을 경우, 연구 개시일로부터 동 사업에서만 인건비를 받아야 함(인건비 중복 수혜 불가)
  - 기 수행 중인 과제에서 인건비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되는 기간의 인건비 지급을 중지하고 본 사업비에서 지원
    - ※ 단,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에서 지급하는 인건비와 고등교육법에 따른 강사로 임용되어 받는 강사료는 중복 수혜 가능

### 다 선정평가

- 신규과제(우수연구집단육성, 장기데이터연구) 선정
  - 평가절차 및 단계

①요건심사		②전공평가		③종합평가
신청요강의 신청자격				평가 결과 종합검토
충족여부검토	$\Rightarrow$	패널 및 발표평가	$\Rightarrow$	및 최종과제 선정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 평가 내용 : 연구의 타당성 및 연구계획서의 우수성 ※ 구체적 평가항목 및 내용 등은 세부시행계획에서 변경 가능

#### □ 계속과제 관리

# 가 연차점검 및 연차평가

#### ○ 소형 2차년도 연차평가

- 연차평가 대상 : '18년 선정된 소형 6과제

- 평가방식 : 연차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

- 평가내용

단계	구분	평가 내용	비고
1단계	전공평가 (토론)	■ 연차별 연구계획 대비 수행실적 및 차년도 연구 계획 평가	전공평가단
2단계	종합평가	■ 당해연도 결과 검토 및 연구비 최종결정	종합평가단

- 평가결과 활용 : 평가결과에 따라 차년도 계속지원 여부 및 연구비 확정 ※ 6개 과제 중 상위 80% 내외 계속지원, 나머지 및 60점 미만 과제 탈락

#### ○ 대형 1차년도 연차점검

- 연차점검 대상 : '19년 선정된 대형 4과제

- 점검방식 : 연차보고서를 바탕으로 온라인 점검

- 점검내용

단계	구분	점검 내용	비고
1단계	연차점검 (온라인)	■ 연차별 연구계획 대비 수행실적 및 차년도 연구계획 점검	연차점검단

- 점검결과 및 조치 : 다음년도 계속 지원 여부 및 사업비 결정

### ○ 대형 2차년도 연차평가

- 연차평가 대상 : '18년 선정된 대형 8과제

- 평가방식 : 연차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

#### - 평가내용

단계	구분	평가 내용	비고
1단계	전공평가 (토론)	■ 연차별 연구계획 대비 수행실적 및 차년도 연구계획 평가	전공평가단
2단계	종합평가	■당해연도 결과 검토 및 연구비 최종결정	종합평가단

- 평가결과 활용 : 평가결과에 따라 차년도 계속지원 여부 및 연구비 확정 ※ 8개 과제 중 상위 90% 내외 계속지원, 나머지 및 60점 미만 과제 탈락

#### ○ 대형 3차년도 연차점검

- 연차점검 대상 : '17년 선정된 대형 13과제

- 점검방식 : 연차보고서를 바탕으로 온라인 점검

- 점검내용

단계	구분	점검 내용	비고
1단계	연차점검 (온라인)	■ 연차별 연구계획 대비 수행실적 및 차년도 연구계획 점검	연차점검단

- 점검결과 및 조치 : 다음년도 계속 지원 여부 및 사업비 결정

### 나 단계평가

### ○ 중형진입 단계평가

- 단계평가 대상 : '17년 선정된 소형 11과제

- 평가방식 : 단계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

단계	평가구분	평가구분 평가 내용		
1단계	토론전공평가발표	■ 연구계획 대비 연구업적(수행실적) 및 차년도 연구계획서 심사 ※ 필요시 연구팀 공동발표 및 토론 병행	전공평가단	
2단계	종합평가	■ 1단계 결과 검토 및 2단계 지원여부 최종결정	종합평가단	

- 평가결과 활용 : 평가결과에 따라 중형단계 진입여부 및 연구비 확정 ※ 11개 과제 중 상위 50% 내외 중형단계진입, 나머지 및 60점 미만 과제 탈락

### 다 결과보고서 제출

- 연구결과 보고
  - (기한)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 (내용) 연구결과보고서(별도 양식, 원문파일 탑재), 연구요약문(국·영문), 연구결과 개요보고서, 연구성과 및 연구성과물 등의 정보입력 및 그 밖에 협약으로 정하는 결과물
  - (방법) 온라인 제출
  - 연구수행과정에서 획득한 통계, 음성자료, 동영상자료 등 각종 자료는 연구수행기관에서 보존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사용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결과보고서 공개 및 활용) 제출된 연구결과 보고서는 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PDF 형태로 공개 가능
  -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기 제출된 결과보고서가 연구 부정행위 사례 (예:허위 및 표절 등)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 대해 교육부 및 전문기관은 소정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제재조치 결과 및 명단을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음

### 최종연구결과물 제출 및 결과평가

○ 연구결과물 제출

라

- (기한) 연구 종료 후 2년 이내
- (제출 기준) 연구성과물 요구수준은 단순 양적 평가방식에서 연구 성과의 질적수준을 고려(공동저자수, SSCI등재여부, 전문우수학술저서여부 등)한 비율방식으로 환산

구분	업적기준	비고
소형	지원년수 × 과제당 200%이상	[브이] 여그겨지므 사저 비오ㅠ
중형	지원년수 × 과제당 400%이상	[붙임] 연구결과물 산정 비율표
대형	지원년수 × 과제당 700%이상	적용

- ※ 연구책임자는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최소 1회 이상, 그 외 연구참여자 (보조원 제외) 전원이 최소 1회 이상 저자로 참여한 성과만 인정(공동연구원이 결과물 미제출 시 연구책임자와 함께 참여제한 조치)
-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게재되었거나 사사표기가 되지 않은 결과물은 연구결과물로 인정하지 않음

#### ○ 결과 조치

- 결과평가 결과 미흡·불량과제는 참여제한 조치 부과(5년이내)

#### ○ 연구성과관리

- 연구자는 연구개시부터 연구결과물 제출 후에라도 전문기관 홈페이지에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성과\* 및 연구성과물\*\*을 탑재할 의무
  - \* 세계인명사전 등재 사실, 각종 언론보도 내용, 인력양성 실적 등
  - \*\* 논문, 저서, 각종 보고서, 특허, 기술발명, 원자료, 중간산출물 등
- 전문기관의 사용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연구성과물을 송부
- ◇ 연구성과물은 연구성과 중 연구자가 수집·작성한 원자료와 중간산출물을 포함
  - 원자료는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참고한 일체의 자료 (단, 저작권 미해결자료 및 타 기관 기 구축 자료는 제출 불가)
  - 중간산출물은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일체의 자료 (예: 사진자료, 음성자료, 동영상자료, 통계자료 등)
- 전문기관은 연구성과물의 이용 및 활용 촉진 추진
  - ※ 국회도서관, KERIS, NTIS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활용을 추진하고, 기초학문자료 센터(KRM) 등을 통한 디지털 콘텐츠(원문, 음성, 동영상, 이미지 등) 서비스 제공 등

### □ 추진 일정

일정	추진내용
'20. 4월	■계속과제(연구집단지원) 연차보고서 접수
'20. 5월	■'20년도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 세부시행계획 확정·시행
20. 3 별	■ 신규과제(우수연구집단육성, 장기데이터연구) 신청공고
	■ 신규과제(우수연구집단육성, 장기데이터연구) 신청접수
'20. 6월	■계속과제(우수연구집단육성) 단계/연차보고서 접수
	■계속과제(연구집단지원) 연차평가
	■계속과제(연구집단지원) 연구개시(7.1.)
'20. 7월	■계속과제(우수연구집단육성) 단계평가
	■ 신규과제(우수연구집단육성, 장기데이터연구) 선정평가
120 0.2l	■계속과제(우수연구집단육성) 연차평가/연차점검
'20. 8월	■ 신규과제(우수연구집단육성, 장기데이터연구) 선정평가
120 081	■신규과제 및 계속과제(우수연구집단육성, 장기데이터 연구)
'20. 9월 	연구개시(9.1.)

# □ [붙임] 연구결과물 산정 비율표

구분	인정범위	저자수	1건당 인정편수	인정율	환산결과
학술논문		1인	2	100%	200%
	SCI,	2인	2	70%	140%
	SSCI, A&HCI,	3인	2	50%	100%
	한국연구재단 우수등재 학술지	4인	2	30%	60%
		5인 이상	2	25%	50%
		1인	1.5	100%	150%
	SCIE	2인	1.5	70%	105%
	SCIE, SCOPUS	3인	1.5	50%	75%
	학술지	4인	1.5	30%	45%
		5인 이상	1.5	25%	38%
		1인	1	100%	100%
	한국연구재단 등록학술지* * 기존 등재(후보) 학술지 포함	2인	1	70%	70%
		3인	1	50%	50%
		4인	1	30%	30%
		5인 이상	1	25%	25%
		1인	2	100%	200%
	교과서 성격의 저서 제외, 독창적인 이론이 제시된	2인	2	70%	140%
학술저서	작성적인 이론이 제시된 전문학술저서에 한함 * ISBN이 수록된 출판물에 한정	3인	2	50%	100%
	* 단순한 서평, 학회지원고, 저서의 개정 증보판은 제외	4인	2	30%	60%
		5인 이상	2	25%	50%



# 인문학대중화사업

#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인문도시) 대학·지역사회 간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인문자산을 발굴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인문자산에 대한 지역민의 접근성 제고
- (인문학포럼) 어문학, 철학, 사회과학 및 예술·체육학 분야에서 대중과의 소통을 확대하여 인문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인문학 진흥 도모

### □ 지원근거 및 추진경과

- 지원근거
  - 「학술진흥법」제3조(정부의 책무) 및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 추진경과
  - ('11~'12) 제1회, 제2회 세계인문학포럼 개최(UNESCO 공동)
  - ('12) 인문도시지원사업 신설(2개)
  - ('14) 제3회 세계인문학포럼 개최(UNESCO, 대전광역시와 공동)
  - ('15) 제1회 한·중인문학포럼 개최(중국사회과학원과 공동)
  - ('16) 제4회 세계인문학포럼 개최(경기도, 수원시, UNESCO와 공동), 제2회 한·중인문학포럼 개최(중국사회과학원과 공동)
  - ('17) 인문도시의 인문역사문화도시로의 브랜드화 추진(27개), 제3회 한·중인문학포럼 개최(중국사회과학원과 공동)
  - ('18) 제5회 세계인문학포럼 개최(부산광역시, UNESCO와 공동), 제4회 한·중인문학포럼 개최(중국사회과학원과 공동)
  - ('19) 제5회 한·중인문학포럼 개최(중국사회과학원과 공동)

# □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단위:백만원)

,	사업명	지원분야	지원분야 지원대상		연간 연구비
인	문도시*		전국 대학 및	1년, 3년	140
ဉ	!문주간		대학부설기관	1년	220
인문강좌		인문사회 全분야 -	인문소양교육 기관, 인문학자	1년	200
선문학 인문학포럼** (예술·체육학 포함)		전국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2년	580	
포럼	한·중 인문학포럼		지방자치단체 등	2 년	380
홍보 및 성과확산			일반 대중	연중	100

<sup>\*</sup> 계속 과제('18년 선정)의 경우, 협약에 따라 연구비 지급

### □ 주요 성과(최근 5년 참석자)

(단위 : 명, 개)

사업명	'15	'16	'17	'18	′19
인문도시 (사업단 수)	47,118 (25)	57,000 (31)	59,230 (27)	47,181 (23)	33,220 (17)
인문주간 등*	82,028	95,935	109,868	183,220	47,247
인문강좌 <sup>**</sup>	14,096	17,089	15,449	8,007	3,855
합 계	143,242	170,024	184,547	238,408	84,322

<sup>\*</sup> 인문주간, 인문학포럼(세계인문학포럼, 한·중인문학포럼)

<sup>\*\*</sup> 격년 개최(20년 세계인문학포럼 개최)

<sup>\*\* &#</sup>x27;17년까지는 석학인문강좌 참여자 수 / '18년부터는 인문학콘서트 참여자 수

### □ 2019년 지원 실적

(단위: 개, 백만원)

I LOI DE	신규	과제	계속	계속과제 계		1
사업명	과제 수	연구비	과제 수	연구비	과제 수	연구비
인문도시	-	-	17	2,360	17	2,360
인문주간	-	220	-	_	-	220
인문강좌	-	200	-	-	-	200
인문학포럼 (세계 및 한중인문학포럼)	-	580	-	-	-	580
홍보 및 성과확산	-	100	-	-	-	100
합계	-	1,100	17	2,360	17	3,460

## 2. 2020년도 추진계획

## 중점 추진 방향

- (인문도시) '20년 신규과제 선정, 현장 컨설팅 및 간담회 실시
- (세계인문학포럼) 개최 지자체와의 연계 협력을 통해, 국내 인문학 성과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 마련
- (한·중인문학포럼) 한·중 간 긴밀한 교류·협력을 통해, 인문학포럼의 성공적 국내 개최

### □ 세부 내용

- (인문도시) '20년 신규 과제(5개 내) 선정 및 지원, '20년 선정 과제 대상으로 현장 방문 컨설팅 및 간담회 실시
- o (세계인문학포럼) 추진위원회 구성, 제6회 세계인문학포럼('20년 11월) 개최
- (한·중인문학포럼) 제6회 한·중인문학포럼('20년 하반기, 중국사회 과학원과 공동 개최) 개최

### □ 지원 규모

(단위: 개, 백만원)

사업명	신규 과제		계속 과제 계		1	
~1 ដ ក	과제 수	연구비	과제 수	연구비	과제 수	연구비
인문도시	5	680	7	1,000	12	1,680
인문학포럼 (세계 및 한중인문학포럼)	-	-	2	580	2	580
합계	5	680	9	1,580	14	2,260

<sup>※ &#</sup>x27;20년도 인문주간, 인문강좌, 홍보 및 성과확산 미지원

### □ 신규과제 선정 (인문도시지원사업)

## 가 신청자격

- 신청기관 : 대학(단과대학, 학과(부) 단위) 및 대학 부설기관
- 참여인력 : 연구책임자(필수), 공동연구원(필수), 강사진(필수), 연구보조원(선택) 등

#### < 참여인력 요건 >

- 연구책임자 : 최근 5년 이내 연구업적이 3편 이상 있는 대학(단과대, 학과(부) 단위) 및 대학 부설기관 소속 연구자
- 공동연구원 및 강사진:「학술진흥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근 5년 이내 연구업적이 1편 이상 있거나 또는 최근 5년간 강의 실적이 있는 자
- 연구보조원 : 사업별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 '학생인건비'의 사용 용도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자로, 5인 이내 구성
  - ※ 연구업적 산정 방식은 인문사회학술지원사업 공통 기준에 의함
- ※ 사업신청 시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신청

### 나 신청 및 참여제한

#### □ 신청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사업 내에서는 1개 대학이 1과제에 한하여 수행할 수 있음
  - 현재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의 경우 신규 신청 불가 ※ 기존에 사업이 종료된 대학의 경우 신규 신청 가능(2020년도 종료 과제포함)
- 본 사업에 참여중인 지자체 및 지역사회기관은 신규 참여 불가 ※ 기존에 참여했더라도 참여기간이 종료된 경우 신규 참여 가능 (2020년도 종료 과제포함)
- 신청마감일 현재 아래와 같이 제재를 받고 있는 연구자는 신청 제한함
  - 신청 이전 교육부 인문시회분야 학술지원 사업비를 지원 받았으나 해당 연구과제의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까지 학술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제재 중인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학술활동결과물 제출 의무(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현재 제재 중인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학술진흥법」제19조 및 관련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 지급 중지 또는 회수 조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제재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자
  - 「국기연구개발시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

#### □ 참여제한에 관한 사항

- 동 사업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제18조에 의한 참여제한 과제에 포함되지 않음
- 연구과제 신청이 완료된 이후라도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 등이 「학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 등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최종 선정에서 제외되며, 선정 이후에도 과제 지원중단 조치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다 선정 평가

- 신규과제 선정
  - 평가 절차 및 단계

단계별	평	가구분	평가내용	비고
1단계	Я	건심사	- 신청요강에 의한 신청자격 충족여부 등 (전산시스템 등에 의한 확인)	한국연구재단
2단계	전공	패널평가	- 추진계획의 적절성, 지역 내 인문역사문화 자산의	전공평가단
	평가	발표평가	발굴 및 활용, 지역사회 등과의 연계 등	
3단계	종	합평가	- 평가결과 등 종합적 검토 및 최종과제 선정	종합평가단

### □ 계속과제 관리

### 가 연차점검

- 연차별 연구기간 종료 2개월 전 연차보고서 제출 및 한국연구재단 검토·승인 후 사업비 교부
- 연차보고서 제출대상 : 7과제('18년 선정)
  - ※ '19년부터 연차점검 폐지

# 나 결과보고서 제출 및 종료평가

○ **평가대상** : 10과제('17년 선정)

○ 평가시기 : 결과보고서 접수 마감 후 3개월 이내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배점
계획 대비 목표 달성도 (강좌 수행의 당초 계획대비 목표달성도)	50
강좌 결과의 우수성 (강의실적, 강좌 운영능력 등)	30
성과의 활용 및 인문학 확산 기여도	20

※ 세부적인 평가항목은 별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설정하고 평가항목은 변경 가능함

## ○ 평가결과 및 조치

점수	등급	조치
70점 이상	PASS	연구종료
70점 미만	FAIL	참여제한

- 평가결과 'FAIL' 판정 과제는 학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참여제한 (최대 5년) 등 제재조치 부과

# □ 추진 일정

일정	추진내용
'20. 1월 ~ 2월	■ '20년도 인문학대중화사업 세부시행계획 수립 ■ 제6회 세계인문학포럼 추진위원회 구성
'20. 3월	■ 인문도시 신규과제('20년도 선정) 신청 공고 ■ 제6회 세계인문학포럼 발표자 및 포럼 기조강연자 선정(~5월) ■ 제6회 세계인문학포럼 주최·주관 기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
'20. 4월	■ 인문도시 계속과제('18년도 선정) 연차보고서 접수 ■ 인문도시 신규과제 접수
'20. 5월 ~ 6월	■ 인문도시 신규과제 선정평가
'20. 7월	<ul> <li>인문도시 신규과제('20년 선정) 연구개시</li> <li>인문도시 계속과제('18년 선정) 연구개시</li> <li>제6회 세계인문학포럼 원고 접수 및 번역(~9월)</li> </ul>
'20. 8월	■ 인문도시 종료과제('17년도 선정) 결과보고서 접수 ■ 인문도시 현장 컨설팅 및 간담회 개최(7월~8월)
'20. 9월	■ 인문도시 종료과제('17년도 선정) 결과보고서 평가
'20. 10월 ~ 11월	■ 인문도시 종료과제('17년도 선정) 평가결과 통보 ■ 제6회 한·중인문학포럼, 제6회 세계인문학포럼 개최

<sup>※</sup> 추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Ⅳ. 학술기반구축(학술자원 <del>공동</del> 관리체계구축)

# 학술자원공동관리체계구축

###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o 대학의 교육·연구 지원을 위한 대학도서관의 역할 강화
- 학술자원 확보와 공동 활용 지원을 통한 학술연구 기반 구축 강화
   및 대학 간 지식정보 격차 완화
- 인문사회분야 연구 성과의 대중화 및 후속 연구 활성화 지원

#### □ 지원근거 및 추진경과

- ㅇ 지원근거
  - 「학술진흥법」 제11조(학술자원관리기관의 육성), 제14조(학술정보의 축적 등) 및 제16조(학술 성과의 활용)
  - 「대학도서관진흥법」,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2019~2023)」
- ㅇ 추진경과
  - ('07) 기초학문자료센터 정보시스템 구축
  - ('08) 학술정보 통계시스템 구축
  - ('13) RISS 해외DB 통합검색 서비스 오픈
  - ('15)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시행령 제정
  - ('15) 인문사회연구성과 협력네트워크 구축(64개 기관 연계)
  - ('16)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16-'18) 수립
  - ('18) 대학도서관 시범평가(3단계, 정량+정성+만족도) 실시
  - ('18) 기초학문자료센터(KRM)-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DB 연계 추진
  - ('19) 기초학문자료센터(KRM)-엑스리브스사(EXLIBRIS) DB 연계 확대
  - ('19) 제 2차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19~'23) 수립 및 공표

### □ 2019년 주요 실적 및 성과

(학술자원 중대) 학술DB 대학라이선스 및 외국학술지지원센터의
 공동 구독을 통해 이용 가능한 학술자원 매년 확충

구 분	2018년	2019년	증감률
외국학술지(인쇄)	2,040만편	2,216만편	8.6% 증가

○ (이용 활성화) 학술DB 대학라이선스, 외국학술지지원센터, 기초학문 자료센터 자료를 활용한 학술자원 공동 활용 증대

구 분	2018년	2019년	증감률
대학라이선스 이용 건수	238백만건	240백만건	0.8% 증가
대학라이선스 구독신청 건수	2,371기관	2,659기관	12.1% 증가
대학라이선스 자료 인용 비율	13.4%	18.8%	5.4% 증가
기초학문센터 이용 건수	810만건	867만건	3.11% 증가

○ (예산절감효과 확대) 학술DB 대학라이선스 및 외국학술지 무료 복사 서비스 운영으로 학술자원 공동 활용 및 구독예산의 지속적인 절감

구 분	2018년	2019년	증감 <del>률</del>
대학라이선스 예산 절감 효과	1,270억원	1,359억원	7.0% 증가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절감 효과	173억원	215억원	24.3% 증가

○ (이용자 만족도 증가) 자료제공 속도 향상, 소장정보관리를 통한 외국학술지원센터 및 기초학문자료센터의 이용자 만족도 증가

구 분	2018년	2019년	증감률
외국학술지지원센터	88.7점	88.9점	0.2% 증가
기초학문자료센터	93.3점	93.9점	0.6% 증가

○ (유관기관 정보공유) 대학도서관 통계정보의 유관기관 간 공유 및 기초학문 분야 연구실적 공동활용 확대

구 분	주요 내용
	- 문체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육개발원등 <b>7개</b> 유관기관 간 학술정보통계시스템(Rinfo) 데이터 연계
기초학문분야 연구실적 공동활용	- 대학도서관, 국회도서관, 연구소 등 <b>61개 기관 연계</b>

## 2. 2020년도 추진계획

### 중점 추진 방향

-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 및 대학도서관발전계획과 연계한 도서관평가 체제 구축으로 실적점검 및 환류를 통한 선순환 구조 확립
- 연구자들이 주요 논문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핵심 전자저널** 신규 도입으로 자유로운 연구환경 조성

### □ 사업내용 및 예산

세부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
국가학술자원관리 및 공동 활용	■대학도서관 통계 시스템(Rinfo) 운영 ■대학도서관 평가 기획 및 운영 ■대학도서관 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 ■외국학술지지원센터(FRIC) 운영 ■학술DB 대학라이선스 구독 지원	14,969백만원
기초학문자료센터 구축	■연구성과물 수집 및 DB 구축 ■기초학문자료센터(KRM) 운영	516백만원

### □ 세부 추진내용

# [ 국가학술자원관리 및 공동 활용 ]

### 가 대학도서관 실태조사

- 2020년 대학도서관 학술자원 통계조사 및 분석
  - ※ 전국 약 460개 대학 통계조사, 통계지침 자료집 제작, 지침 연수회 개최
- 학술정보통계 정확성 제고를 위한 웹 기반 검증시스템 구축·운영
  - ※ 통계 주요항목: (1) 기본정보, (2) 소장 및 구독자료, (3) 시설, (4) 인적자원, (5) 예산 및 결산, (6) 이용 및 이용자, (7) 전자서비스
- 통계 지침 수요 조사 및 **대학도서관 통계 항목·지침위원회 운영** ※ 1차 검증 사유 타당성 확인을 통한 증빙자료 제출 대상교 선정
- 대학도서관 통계 홍보 다각화로 **통계인식 및 활용도 제고** ※ 통계분석자료집, 인포그래픽 리플렛(국·영문), 카드 뉴스 제작 및 전국 배포

### 나 대학도서관 평가

- 대학도서관 진흥법 및 시행령에 따른 **대학도서관 평가 시행** 
  - ※ '19년 개선된 지표에 따른 세부 입력지침 및 평가 프로세스 설계
  - ※ 평가업무 효율화를 위한 평가시스템 개선·운영
- 실효성 있는 평가를 위한 **대학도서관 평가결과 활용 방안 마련** ※ '대학기관평가인증과의 연계 강화 및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대학도서관 주요 정책자문을 자문하는 대학도서관진흥자문위원회 활성화

### 다 대학도서관 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

- 대학도서관 **현장인력 직무향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 ※ 교육, 연구지원 기능강화 기반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19~'23)의 실현을 위한 전문 과정 신규 개발 (교육·연구지원, 연구윤리전문가 양성 강화, 협상 등)
  -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및 수요자 맞춤형 실무교육 과정 개발
- 대학도서관 사서의 **직급·직무·서비스별 전문교육 과정 운영** 
  - ※ 교육 수요조사 분석을 통한 직급, 수준(기초·심화)별 교육 실시
- 전문교육 기관과 협업을 통한 주제 분야별 전문성 강화 추진
  - ※ 공동운영: 통계청 통계교육원 「대학도서관 통계분석 및 활용」, 한국저작권위원회 「연구윤리와 저작권 전문가 양성과정」

### 라 외국학술지지원센터(FRIC) 운영

- 학문 주제분야별\* 지정된 10개 센터를 통해 해외 인쇄 학술지를 구입하여 대국민 무료 원문복사서비스 제공
  - \* 임상의학, 자연과학, 농·축산, 인문과학, 교육·사회학 등(10개 분야)
  - ※ RISS, NDSL 등 외국학술지 검색 창구를 활용하여 서비스 이용자 확대
- 분야별 주요 해외학술지 선정·구독을 통한 가용 학술자원 증대
   ※ 해외학술지논문 보유량 : ('18) 2,039만편 → ('19) 2,211만편 (8.4% 확대)
- 전국 대학도서관 대상으로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운영 사업으로 인한
   예산절감 효과 측정

- 외국학술지지원센터(FRIC) 회계기간 조정
  - ※ 국회 교육위원회 지적사항에 따라 회계연도 불일치 해소를 통한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운영 효율성 제고
- o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운영 개선을 위한 연구** 추진
  - ※ 출판·유통 환경의 변화에 따른 인쇄저널 기반 서비스 운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센터 운영 정책 연구

### 마 학술DB 대학라이선스 구독 지원

- 핵심DB 도입을 위해 학술연구자 **수요조사**, 협상위원·공급사 협상 프로세스 조기 운영으로 양질의 학술자원 확보
  - ※ 대학라이선스 도입 종수 확대 ('19) 28종 → ('20) 39종
  - ※ 대학라이선스 운영: (기존) 3월~12월 (개선) 1월~12월
- 다구독 대학 중심의 대학라이선스 협상단 구성 및 평가·협상 집중도 제고를 위한 분과 운영 추진
  - ※ 최근 3년간 대학라이선스 구독 상위 45개 기관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후보단 구성 후 선정
  - ※ 신규품목 평가 시 협상위원 외 유관기관(대도연)의 주제 분야 전문가를 추가하여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
- 수요조사 및 이용현황 분석을 통해 기존 구독 품목에 대한 서비스
   품질 개선사항 도출 및 필요 시 신규품목 대체 도입 추진
  - ※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금·구독조건 조정(상위 품목에 대한 다년계약 조건 포함)
- 학술자원 공동수집 및 영구보존을 위한 해외우수박사학위논문,
   전자책, 학술논문 등의 원문 콘텐츠 확대 구축
  - ※ 도입대상: DDOD, EBSCO eBook, GVRL, PAO, The Vogue Archive(5종)
  - ※ 아카이브 콘텐츠 도입 규모: ('19) 260만건 → ('20) 265만건
- 국내외 학술DB 컨소시엄 운영주체와 정기적인 정보교류·협력 관계 구축 (국내외 학술정보공유 네트워크, 가칭)을 통해 글로벌 독점 공급사에 공동 대응 방안 마련
  - ※ (국내) KERIS-KCUE-KISTI 3개 학술정보 컨소시엄 주체와 정기 협의체 마련
  - ※ (국외) ICOLC(International Coalition of library consortia) 미팅 참여를 통한 해외 학술정보 구독 동향 수집 및 공동 대응 체제 구축

- 국내외 학술정보의 효과적인 도입을 위한 **대학라이선스 제안 품목 간** 빅데이터(중복률·통계·활용도) 분석 기능 시스템 개발
  - ※「대학라이선스 품목 KCI 참고문헌」의 인용 분석을 통해 학술연구자의 활용도 측정 및 데이터 기반의 학술지 수요 예측
  - ※ 자동분석 기반 구축을 통해 협상위원의 업무경감 및 공급사 협상 시 근거기반 의사결정(Evidence based decision making) 지원 체계 마련
- 대학라이선스 협상 단계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회 운영
  - ※ 전자정보 협상전문가 육성을 위한 사례중심(Case Study) 교육 프로그램 제공
  - ※ 대학라이선스 협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체제 구축(협상, 계약, 법률 등)
- 무료공개 학술자원(OA) 서비스 및 지원체계 고도화
  - ※ 해외 OA수집기관 및 도서관과 정보공유 네트워크 구축으로 양질의 OA콘텐츠 서비스 확충 추진

### [ 기초학문자료센터 구축 ]

### 가 기초학문자료센터(KRM) 운영

- 교육부 소관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되는 원자료, 중간산출물 등을 지속적으로 수집·가공·제공
  - ※ 기초학문자료센터 구축사업('05년~)을 통해 기초학문육성 인문사회분야 지원 과제의 성과물 수집 및 표준화된 디지털 DB구축
- DB구축 사업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여 연구진행에 따른 원자료 및 중간산출물 수집·선별 전문성 제고
  - \* 2개 사업단(2년 지원) : 인문학(예술체육분야 포함). 사회과학(복합학 분야 포함)
- 국내 인문사회 성과 정보를 통합한 종합 포털 서비스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외부 DB연계 서비스 제공 확대
  - ※ Open-API 기반 실시간 연계서비스 기관 확대 : '19년(50개) → '20년(56개)

# □ 추진 일정

· ·	太コロリロ
일정	추진내용
'20. 1월	■'19년 학술자원공동관리체계구축사업 완료 보고 ■'20년 대학도서관 평가 계획 수립 및 대학별 안내 ■대학도서관 사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수요조사 ■학술DB 대학라이선스 구성을 위한 대학도서관 수요조사 ■'18년 선정 기초학문자료센터 DB구축사업단 결과보고서 접수 ■'20년 기초학문자료센터 DB구축사업단 신규선정 공고
'20. 2월	■ 전국대학 대상 대학도서관 통계 항목, 지침 수요조사 ■ 수요조사 분석을 통한 교육과정 계획수립(13개 과정) ■ 대학라이선스 협상단 및 선정관리위원회 구성 ■ '20년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상반기 운영 협의회 개최 ■ '18년 선정 기초학문자료센터 DB구축사업단 결과평가
'20. 3월	■대학도서관 통계 항목·항목 지침위원회 구성 및 운영 ■'20년 기초학문자료센터 DB구축사업단 선정평가 및 협약 체결 ■'20년 기초학문자료센터 시스템 운영 용역 계약 체결
'20. 4월	■대학도서관 사서 직무향상 교육과정 운영(3~12월) ■학술DB 대학라이선스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 ■'20년 기초학문자료센터 DB구축사업단 사업 개시 ■'20년 기초학문자료센터 시스템 운영 용역 개시
'20. 5월	■대학도서관발전종합계획('20) 대학별 제출 및 평가 반영 ■'20년 대학도서관 통계조사 연수회 실시 ■'20년 대학도서관 평가 설명회 개최 ■학술DB 대학라이선스 서비스 만족도 및 의견 수렴 조사 ■전국 대학 대상 학술지 구독 중단 조사 실시
'20. 6월	■전국대학 학술자원 현황 통계조사 실시 ■대학도서관 우수대학 대상 교육부 장관상 시상 ■센터별 외국학술지 소장정보 검증 및 DB 갱신 ■'20년 기초학문자료센터 시스템 운영 용역 계약 체결
'20. 7월	■'20년 대학도서관 평가를 위한 대학입력지표, 증빙자료 등록 ■학술DB 대학라이선스 평가 및 선정관리위원회 1차 심의
'20. 8월	■'20년 대학도서관 평가를 위한 대학자료 검증 및 평가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 ■학술DB 대학라이선스 협상 및 선정관리위원회 2차 심의
'20. 9월	■학술DB 대학라이선스 도입품목 및 구독조건 확정 ■'20년 대학도서관 평가 이용자 만족도조사 실시 ■외국학술지지원센터 하반기 운영협의회 개최
'20. 10월	■학술DB 대학라이선스 구독조건 설명회 개최 ■'20년 대학도서관 평가 실시, 결과 분석, 진단보고서 배포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운영결과 보고 ■외국학술지지원센터 평가결과에 따른 예산배정
'20. 11월	■ 대학라이선스 구독계약 약정체결 및 구독료 지급 ■ '20년 대학도서관 평가 결과 분석 ■ 기초학문자료센터 '20년 DB 구축 결과 품질검수 실시
'20. 12월	■ '20년 대학도서관 통계 분석 연구 및 자료집 제작 ■학술DB 대학라이선스 사업효과 측정 ■ '20년 대학도서관 본평가 진단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제작 ■ 대학도서관 사서 직무향상 교육과정 운영결과 분석 ■ '20년 기초학문자료센터 시스템 운영 용역 계약 완료보고

Ⅴ. 기타사항	
1. 주요 행정사항 2. 공통 적용사항	

# 1 주요 행정사항

#### □ 교육부-전문기관 간 사업위탁 협약 체결

- **학술연구지원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고자 할 경우 교육부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과 **위탁협약을 체결**
- 단, 교육부 장관은 전문기관(장)이 수립한 사업 세부시행계획을 승인함으로써 위탁협약을 대신할 수 있음

#### □ 전문기관 장의 사업비 관리

- 전문기관의 장은 세부사업별로 회계 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
  - 2개 이상의 세부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계좌 통합관리가 가능하나, 각 사업별로 회계 관리 사항을 구분하여 증빙할 수 있도록 조치
- 사업관리 및 운용상 발생한 이자수입, 집행 잔액 및 과다지급액 등은
   사업의 지원 및 관리 등에 목적에 맞게 사용 가능
  - 인문사회분야는 이자수입에 한하여 동일 목적의 사업에 사용 가능하며, 이 경우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사전에 득하여야 함
    -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제27조(사업비 이자의 사용)

### □ 사업운용사항 보고

- 시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결과보고서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
  - ※ 결과보고서 포함 내용: 세부사업별 지원내역, 세부사업별 집행실적, 지원 성과 등 실적보고에 필요한 사항

### □ 대학도서관 자료구입 지원

- 연구자들의 **연구지원 향상** 등을 위하여 **대학혁신지원사업비**에서 대학도서관 **자료 구입비(전자저널** 등) **지원 가능** 
  - ※ 단, 대학별 사업목적에 부합해야 하고 사업계획서 내 세부프로그램 반영 필요
- 간접비 집행 시 대학도서관 자료 구입비에도 10% 이상 지원 권고

### □ 신청 및 참여 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학술연구지원사업 **참여제한 조치 기간 중에 있는 자** 
  - ※ 참여제한 시유가 있으나 아직 참여제한 조치를 실제로 받지 않은 연구자는 과제 신청이 가능하나, 과제 선정 및 연구개시 후 참여제한 조치가 발생하는 경우 과제 선정 당연 취소
- 연구 수행 전념 : **인문시회분야** 학술연구지원시업은 **1책 3공 내에서** 과제 수행 가능
  - ※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신청년도 이전 해부터 시작하여 학술연구지원사업 신청년도에 종료되는(최종 종료일이 당해연도 말일('20.12.31.) 이내인) 과제는 과제 수 산정 시 미포함. 단, 1책 3공이라도 인건비 중복 수혜는 불가

#### <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중 과제 수 미포함 사업 >

- ① 우수학자지원사업
- ②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연구책임자에 한함)
- ③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중 융합연구총괄센터
- ④ 사회과학연구지원(SSK)사업 중 연구집단지원과제
- ⑤ 인문학대중화사업(인문도시지원, 세계인문학포럼, 한·중인문학포럼)
- ⑥ 인문한국플러스(HK<sup>+</sup>)지원사업 중 성과총괄확산센터
- 연구과제 협약 체결 시, 미성년 저자 또는 연구자 배우자, 직계존
   ·비속이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 연구비 지원 기관에 반드시 사전 숭인받아야 함을 협약에 명시하고 위반 시 제재처분

### □ 성비위 등 갑질 교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강화

- 대학 자체 감사·교육부 감사 등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등 성비위 및 갑질\*로 장계가 확정된 교원 및 연구자에 대해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참여 제한
  - ※ 연구과제 협약 체결시, '성희롱-성폭력 등 성비위 및 갑질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경우 과제 중단 및 향후 1년간 학술지원대상자에서 선정 제외됨'을 협약서에 명시

#### \* 갑질의 개념

-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乙)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 ※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에서 제시한 개념
  - ※「공무원 행동강령」에 일반적 갑질 금지 규정 등 신설하여 개념 정립 예정(권익위, '18.10)
  - 위법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행위
  - 적법 또는 재량권 내의 행위라도 인격적 모멸감을 유발하는 경우에도 갑질에 해당
- 연구비 공동관리(대학원생 인건비 횡령), 논문도용, 사학비리 등 교육분야의 갑질은 통상 권력형 범죄의 양태를 보이며 발생

#### 《관련 규정》

#### 「학술진흥법」

- 제19조(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 ②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연구자 및 대학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을 중지 하거나 이미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2.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위반한 경우

#### 「학술진흥법 시행령」

- 제20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기간)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유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4.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위반한 경우: 1년

# 2 공통 적용사항

### □ 과제의 신청

- ㅇ 공고
  - (공고 방식) 전문기관 홈페이지 일괄 공고
  - (사업 공고 시기) 2020년 1~2월(30일 이상 공고)
- 과제의 신청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등
    - ※ 한국연구재단 위탁사업은 연구책임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시스템 (ernd.nrf.re.kr)를 통해 온라인 입력 및 탑재
  - (소속기관 확인) 주관연구기관에서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 ※ 대학 등의 연구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연구자의 경우,「학술진흥법」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학술단체를 통해 신청 가능
- 신청자격
  - 「학술진흥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연구자"로서 사업(유형)별 조건을 충족하는 자
- 지원형태 및 연구진 참여
  - (개인연구) 연구책임자 1인 참여
  - (공동연구) 연구책임자 외 1인 이상 공동연구원 참여
  - (집단연구) 연구책임자 외 공동연구원이 참여하되, 일정한 기관 (연구소) 단위의 연구활동을 지원

#### □ 평가단계

○ 평가절차 및 내용

①요건 심사		②전공 평가		③종합평가
신청요강의 신청자격	$\Rightarrow$	연구계획서 및 연구역량	$\Rightarrow$	평가 결과 종합검토 및
충족여부검토	$\Rightarrow$	평가	$\Rightarrow$	최종과제 선정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 ※ 사업별, 전문기관별 별도 평가절차 및 내용 가능
- 요건심사 : 전산시스템에 의해 신청자격 충족여부 등 확인※ 사업 특성에 따라 필요시 사업담당자가 추가 확인
- 전공평가
  - (온라인평가) 온라인으로 전문가에 의한 개별 심사
  - (토론평가) 연구계획 집단 검토 및 토의에 따른 평가
  - (발표평가) 토론평가에서의 의문사항 확인, 연구진 연구수행 의지 및 기관협력사항 확인
  - (PM Review) 온라인평가의 경우 해당 학문분야 PM이 전공평가 결과 검증(평가자 간 점수 격차에 대한 보완 및 검증 등)
    - ※ PM Reviewer 구성 : 학문단장, 책임전문위원(CRB), 전문위원(RB)
- 배제심사자(신청자별 2인 지정) 제도 운영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유형 1), 신진연구자, 중견연구자 우수학자, 명저, 저술출판, 일반공동(일반공동연구유형), 인문도시 (2인 선택)

- 종합평가
  - 평가 주관 : 종합평가단
  - ※ 종합평가단 구성 : 외부심사위원으로 구성

# □ 선정절차 및 내용

- (예비선정) 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기간 예비선정과제를
   공개하여 타 연구비 지원 프로그램과의 중복지원 등을 방지
  - ※ 예비선정 결과에 대해 표절 및 중복지원 관련 이의신청제도 운영
- (최종선정) 예비선정 기간 중 중복성 검토 등 절차를 거쳐 선정
- (협약체결) 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 연구자 3자간 협약 체결※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장이 협약 주체로 참여 가능

#### □ 연구비 지급 및 관리

- (지급방법)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주관연구기관) 장을 경유하여 지급※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는 것도 가능
- (지급시기) 최종선정 후 지원 결정 연구비 지급
- (연구비 관리)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주관연구기관)이 중앙관리※「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제22조

### □ 간접비 지급에 관한 사항

- (지급방법) 직접비와 별도로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주관연구기관)의
   간접비 적용비율에 따라 일괄 지급
  - ※ 기관별 간접비 고시 비율 적용
- (간접비율 적용) 간접비는 원칙적으로 당해연도 시점의 고시율을
   적용하되, 사업별로 간접비 탄력적용 가능
  - ※ 단, 정액지급 사업이라도 기관별 간접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
  - ※ '18년 이전 선정 계속과제는 선정당시 신청요강과 협약서에 따라 협약시점 적용비율로 지급

### □ 종료과제 관리

- 연구결과 보고
  - (기한)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 \* 저술출판지원시업 및 명저번역지원시업의 경우 종료평가보고서 및 결과보고서를 통합하여 연구종료일까지 결과보고서 제출
  - (내용) 연구결과보고서(별도 양식, 원문파일 탑재), 연구요약문(국·영문), 연구결과 개요보고서, 연구비 집행정산 내역서\*, 연구성과 및 연구 성과물 등의 정보입력 및 그 밖에 협약으로 정하는 결과물
  - \* 연차정산 보고는 연구비 중앙관리 부서에서 입력하며, 연차 종료 후 3개월 이내 수행
  - (방법) 온라인 제출
    - ◇ 연구수행과정에서 획득한 통계, 음성자료, 동영상자료 등 각종 자료는 연구수행기관에서 보존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사용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결과보고서 공개 및 활용) 제출된 연구결과 보고서는 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PDF 형태로 공개 가능
    - ◇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기 제출된 결과보고서가 연구 부정행위 사례(예:허위 및 표절 등)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 대해 교육부 및 전문기관은 소정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제재조치 결과 및 명단을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음
- 연구결과물 제출
  - (기한) 연구 종료 후 2년 이내
  - (제출 기준) 게재 논문 편수를 기준으로 산정

구분	실적 기준	실적 산정 방식
개인	지원 년수 ×	■ 논문 :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학술지 또는 SCI(E), A&HCI・
	지원 년수 ×	I SYCESCOPIS 등재지는 1펴
o <del>등</del> 호 집단	시원 원부 ^   논문 2편	■ 저서·역서 : 단독 저역서의 경우 논문 3편, 공동 저역서은 논문 2편

- ※ (개인연구) 연구책임자시 주저자(제1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표기된 성괴만 인정
- ※ (공동/집단연구) 연구책임자는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최소 1회 이상, 그 외 연구참여자(보조원 제외) 전원이 최소 1회 이상 저자로 참여한 성과만 인정(공동연구원이 결과물 미제출 시 연구책임자와 함께 참여제한 조치)
-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게재되었거나 사사표기가 되지 않은 결과물은 연구결과물로 인정하지 않음
- ※ 세부사업별로 별도 기준 부과 기능. 단, 이 경우 사업공고 및 협약체결 시 해당 사항 명시

- 결과 조치
  - 결과평가 미흡·불량 과제는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부과\*
  - \* (개인연구) 불량 판정과제의 경우에는 연구비 일부 환수(18년 신규선정 과제부터 적용) 조치
- 0 연구성과관리
  - 연구자는 연구개시부터 연구결과물 제출 후에라도 전문기관 홈페이지에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성과\* 및 연구성과물\*\*을 탑재할 의무
    - \* 세계인명사전 등재 사실, 각종 언론보도 내용, 인력양성 실적 등
  - \*\* 논문, 저서, 각종 보고서, 특허, 기술발명, 원자료, 중간산출물 등
  - 전문기관의 사용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연구성과물을 송부
    - ◇ 연구성과물은 연구성과 중 연구자가 수집·작성한 원자료와 중간산출물을 포함- 원자료는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참고한 일체의 자료 (단, 저작권 미해결자료 및 타 기관 기 구축 자료는 제출 불가)
      - 중간산출물은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일체의 자료 (예: 사진자료, 음성자료, 동영상자료, 통계자료 등)
  - 전문기관은 연구성과물의 이용 및 활용 촉진 추진
    - ※ 국회도서관, KERIS, NTIS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활용을 추진하고, 기초학문자료 센터(KRM) 등을 통한 디지털 콘텐츠(원문, 음성, 동영상, 이미지 등) 서비스 제공 등

### □ 계속과제 관리

- (관리대상) 다년 지원 과제
- (관리내용) 연차 및 단계 보고서 접수, 점검 및 평가 실시
- (평가결과 활용) 차년도 혹은 다음단계 지원여부 및 연구비 결정
  - ※ 지원중단 결정시 평가연도 연구종료일은 최종연구 종료일로 산정하여 연구 결과보고 및 연구결과물 제출 관련 의무 이행

#### □ 기타사항

- 개인연구의 경우 임신·육아 휴직에 의하여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을 받아 연구기간 연장(최대 2년 이내)을 허용하여 연구중단 및 경력단절 방지
  - ※ 별도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